방통융합정책연구 KMCC-2025-33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Research on legal system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이수경/정영주/김상유/강석준

2025.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화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화우
총괄책임자 : 이수경
책임연구원 : 정영주
참여연구원 : 김상유
강석준

목 차

요약문 ····· v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 1

2.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의 필요성 ····· 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3

1. 주요 내용 ····· 3

2. 연구 방법 ····· 3

제2장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위 획정 ····· 4

제1절 공영방송의 정의 ····· 4

1. 공/민영 구분의 필요성 ····· 4

2. 공영방송의 정의와 무정형성 ····· 4

3. 공영방송의 진화 ····· 6

제2절 공영방송의 범위 획정 ····· 7

1. 학계에서의 기존 논의 ····· 7

2. 법제도 현황 ····· 10

3. 판례 분석 ····· 13

4.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23

제3절 소결 :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범주 획정 ····· 25

제3장 공영방송의 책무와 평가 체계 개선 ····· 27

제1절 공영방송의 책무와 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 27

1. 재허가/평가 제도 현황 ····· 27
제 2 절 공영방송의 차별적 책무와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협약 제도 도입 논의 ···· 31
1. 협약제도 도입 논의 경과 ····· 31
2.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의의 ····· 35
3.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설계 ····· 36
4.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공통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사업자간 책무 차별화 ··· 41
5. 협약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논의 ····· 62
제 3 절 소결 ····· 82

제 4 장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과 공적 재원 마련 ····· 83

제 1 절 공영방송 재원 ····· 83
1. 협약제도와 재원 마련 ····· 83
2. 공영방송 재원 모델의 유형과 특성 ····· 83
3. 해외 현황 ····· 84
제 2 절 공영방송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논의 ····· 85
1. 기존 논의 ····· 85
2. 법안 논의 현황 ····· 92
제 3 절 소결 ····· 102

제 5 장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 103

제 1 절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법안 ····· 103
1.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획정 ····· 103
제 2 절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설정과 평가체계로서 협약제도 도입 근거 법안 ····· 107
1. 공적 책무의 설정 ····· 107
2. 협약 제도 도입 관련 법안 ····· 115
제 3 절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 125
1. 공영방송재정위원회(가칭) ····· 125
2. 수신료 등 재원 관련 규정의 정비 ····· 125

참 고 문 헌 ····· 127

표 목 차

<표 2－1> 미디어 제도의 재구성 ····· 10
<표 3－1> 현행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평가 제도 ····· 27
<표 3－2> 방송평가 및 재허가 심사 항목 현황 ····· 28
<표 3－3> 방송평가 중 지상파 및 공영방송의 차별적 평가 내용 ····· 30
<표 3－4> 방송평가 항목 현황 ····· 38
<표 3－5> KBS의 공적책무와 핵심과제 ····· 43
<표 4－1>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93
<표 5－1> K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 108
<표 5－2> E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 109

그 림 목 차

[그림 2－1] 공공방송의 범위 ····· 9
[그림 2－2] 다플랫폼 다채널 시대의 종합적 방송채널정책(규제) 모형 ····· 9
[그림 3－1] 지상파 방송 책무 차별화 (예시) ····· 61

요 약 문

1. 제 목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TT 플랫폼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건강한 공론장 구축을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범주를 제안하고,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협약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며,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연구 범위는 국내 법령과 그간 관련 주제에 관해 연구한 학술문헌 검토, 방송과 관련된 판례 및 그간 발의된 국회 법률 개정안 분석을 하여 공영방송 관련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제안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에서 공영방송의 범주 획정을 위해 공적 소유, 공적 지배구조, 공적 재원 등의 요건을 검토함. 학계에서는 KBS와 EBS를 기본으로 하되 MBC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가 부재하며 모든 지상파 방송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나, KBS와 MBC에 대해서는 일부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음. 판례는 KBS, MBC, EBS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제3장에서는 그간 연구된 학술문헌을 검토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등을 연구함. 현행 재허가와 방송평가 제도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영방송의 차별적 책무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약제도 도입이 논의되

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과 운영원칙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 협약제도는 정부와 공영방송 간 수평적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KBS, MBC, EBS의 공통 책무와 차별적 책무를 설정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설명책임을 제고하는 제도로 설계됨

제4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협약제도와 재원 마련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연구를 반영. 공영방송 재원 모델은 공적 재원, 상업 재원, 혼합 재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은 혼합 재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신료 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연구 결과 위원회의 논의 대상을 수신료에 국한하지 않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 전반으로 확대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5장은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함

먼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 첫째, 공적 소유·지배구조·재원을 조건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시행령으로 사업자를 명시하는 방안, 둘째,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방안, 셋째, 공공서비스방송 개념을 신설하고 그 중 공영방송을 특정하는 방안임

다음으로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과 운영원칙을 명시하고, 협약 체결·평가·환류 절차를 구체화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수신료 등 재원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도출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 직접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정부와 국회의 미디어 정책 수립 및 방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입법자료를 제공

6. 기대효과

공영방송의 정의, 공적 책무, 평가체계,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공영방송 제도의 근본적 혁신과 재정립을 도모할 수 있음.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

SUMMARY

1. Title

Research on legal system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proliferation of OTT platforms has reshaped the media landscape, weakening the position of public broadcasting.

Ami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defining th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re urgently needed to foster a healthy public sphere.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proposes the legal basis and scope of public broadcasting,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an agreement system to fulfill public responsibilities,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ecure public funding.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a review of domestic laws and academic literature on related topics, analysis of broadcasting-related case law and proposed National Assembly amendments, and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Broadcasting Act and other related laws.

4. Research Results

Chapter 2 examines requirements such as public ownership,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funding to define the scope of public broadcasting. Academics primarily focus on KBS and EBS,

but ongoing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to include MBC.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lacks a legal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and imposes uniform regulations on all terrestrial broadcasters. However, some discriminatory provisions are in place for KBS and MBC. While case law recognizes KBS, MBC, and EBS as public broadcasters, the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requires a social consensus.

Chapter 3 examines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public broadcasting by reviewing existing academic literature. The current relicensing and broadcast evaluation system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both public and private broadcasters, leaving the differential responsibilities of public broadcasting unclear. To address this, the introduction of an agreement system has been discussed,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specify the public purpose and operating principles of public broadcasting, centered 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ow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academia. The agreement system is designed to establish horizontal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broadcasting, establish common and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for KBS, MBC, and EBS, strengthen the autonomy of public broadcasting, and enhance accountability.

Chapter 4 examines the essential need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public broadcasting to fulfill its public responsib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an agreement system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reflects the need for interoperability. The public broadcasting funding model is divided into public, commercial, and mixed funding sources, with Korea adopting a mixed funding model. The study proposes a plan to secure stable funding for public broadcasting and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of license fee decisions by establishing a license fee committe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ommittee's scope of discussion should be expanded beyond license fees to encompass all public funding source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Chapter 5 proposes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findings. First, three legal amendment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First, public broadcasting is defined by public ownership, governance, and funding, and the operator is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Second, public broadcasting is defined based on public responsibilities. Third,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newly established and public broadcasting is specifically designated.

Next, to introduce an agreement system, the public purpose and operating principles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specified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agreement conclusion,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dures should be specified. Finally, Regarding securing funding for public broadcasting,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Broadcasting Finance Committee and proposes amendments to regulations related to funding, including service fe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clarifies the legal definition and scope of public broadcasting and presents specific legal amendment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an agreement system. This can serve as direct evidence for revisions to the Broadcasting Act, the Broadcast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Act, and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It provides practical legislative data for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formulate media policies and improve the broadcasting ecosystem.

6. Expectations

By eliminating leg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definition, public responsibilities, evaluation system, and funding of public broadcasting, this study can promote fundamental innovat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rough the agreement system, the study can strengthen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restore its public nature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Chapter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4. Research Results

Chapter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Chapter 6. Expectation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 OTT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확산으로 실시간 방송의 입지는 약화되고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는 개인화되며 미디어 산업 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음

○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소셜미디어와 자본의 지배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중심이었던 기존 체제가 해체되고, 공공성과 공론장 역시 다층화·다차원화하면서 공영방송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조항제, 2025, 10)

○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채널들이 등장하고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지만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현상이 만연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론장 구축이 필요함

○ 공영방송은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과 공진화를 견인해 갈 기간 미디어(Core Media)이자 핵심적 공론장(The Core Public Sphere)으로서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 재건의 역할 수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형식임(Curran, 2002)

2.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5공화국과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공영방송 제도를 정착, 유지시켜 왔으나 방송법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 사업자 범주가 특정되지 않는 법적 불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방송 산업 전체의 질 제고를 견인해 왔음

○ 그러나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함은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과 차별적 책무의 부재로 이어지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논의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 과거 지상파 방송 과점 시기, 수신료를 보완할 수 있는 교차보조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때와 달리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의존 심화 속에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토대 및 내적 부조 시스템이 붕

괴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확장이 정보와 의사 소통의 확대와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난립과 사회적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이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론장이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면 공영방송은 그러한 역할의 일차적 담지자 역할을 해야 함

○ 그러나 허약한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지탱해 온 공영방송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정당성과 정체성,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차별적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협약 제도 도입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

○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동일) 방송제도개선추진반(2020)의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2021. 1)에서 협약제도 도입이 제안된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이후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하위 규정 등을 마련하는 연구들을 진행함(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 2021; 성욱제・송민선・강준석, 2022; 성욱제・송민선・강준석, 2023)

○ 이들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협약 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도출하여 계량화된 평가방안 등을 법제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협약의 구체적인 실무 작업(협약서(안), 협약체결 준비 프로세스 일반, 협약서 첨부 자료 양식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협약제도의 대상(범위)을 KBS 뿐 아니라 EBS까지 확대하여 관련 법 개정 사항을 검토함. 나아가 협약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핵심적 과정에 해당하는 협약의 세부항목/지표별 이행여부 판단 기준 등 이행실적 점검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 방안 등의 하위규정까지 마련하여 제시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협약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인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고, 현행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법 개정 사항과 조문 등을 고도화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우리 사회 공영방송 제도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범주를 획정하여 공영방송 사업자의 차별적 책무와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 연구들을 통해 KBS, EBS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의 공영방송 지위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위상을 정립하며, MBC의 차별적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 필요성 검토 및 개정안 도출에 연구 목적을 둠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주요 내용

○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함

○ 2장에서는 공영방송의 학술적 정의와 기존 논의, 법제도 현황, 관련 판례 분석, 국회 법안 발의안 검토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범주를 제안함

○ 3장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를 위한 기존 재허가/방송 평가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적 체계로서 협약 제도의 의의와 논의 경과, 국회 법안 발의안 검토 등을 통해 KBS, MBC, EBS의 공통 책무와 차별적 책무를 도출함

○ 4장에서는 공적 책무 수행에 요구되는 공적 재원 마련 관련 학술 논의들과 국회 법안 발의안 검토 등을 통해 공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 5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공영방송의 책무와 평가 체계로서 협약 제도 도입,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공영방송 정의와 범주 획정을 위한 국내 법령, 학술 문헌 검토 및 판례, 국회 발의안 분석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를 위한 국내 법령, 학술 문헌 검토 및 국회 발의안 분석

○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학술 문헌 검토 및 국회 발의안 분석

○ 방송 관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제2장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위 획정

제1절 공영방송의 정의

1. 공/민영 구분의 필요성

○ 공영방송의 범주를 확실히 하고 차별화된 책무를 부여하며 공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강상현, 2013; 강형철, 2008; 김진웅, 2008; 윤석민, 2011; 정윤식・강명현, 2012; 황근, 2010)

○ 공영방송의 범주와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며, 공영방송과 민간 상업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음(강상현, 2013)

○ 공영방송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방송 일반의 보편적 임무와 구분되고 민영방송과도 다른 차별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그 수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공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공영방송의 정체성 규정은 상업방송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함.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시장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의 차별성은 전체 방송 시장 지형에서 일종의 청정 지역(그린벨트)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선도함으로써 상업방송의 품질 제고를 유발시켜 사회 전반의 방송 문화가 동반 상승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기대(Oliver, 2005)하는 것임

2. 공영방송의 정의와 무정형성

○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공적 책무(public remit), 재정 특권(financial privilege)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공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공통적인 요소로 함(김진웅, 2008; 윤석민, 2011, 3; 정윤식, 2008, 10; 최세경, 2005; Price & Raboy, 2003; Ward, 2004)

○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국내 학자들은 다양하게 공영방송을 설명해 왔음

- 최영묵(2021)은 공영방송은 공적 조직에서 수신료 등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 방송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정의함
- 윤석민과 이현우(2012)는 공영방송은 가장 단순하게 정의할 때 국가의 방송 내지 주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을 지향하는 제도라고 설명함.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을 실천하고 국가권력의 통제 및 자본의 통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이념은 소유 및 진입 등 사업구조, 재원의 확보, 사장 및 이사진 등 경영진의 구성, 프로그램 편성내용 등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경영 전반에 걸쳐 국민이 신뢰하며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송을 하기 위한 엄격한 공공적 규제정책으로 가시화되며, 공영방송은 이러한 제도화된 규제정책의 형식을 넘어 방송일선에서 근무하는 방송인들의 내면화된 가치, 업무 철학, 내지 조직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규범적 실체라고 제시함
- 정영주(2015)는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이나 사적 자본이 아닌 공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을 토대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라고 제시함
- 정영주와 홍종윤(2016)은 공영방송의 근본적 정체성은 사회적 특혜 부여에 대한 대가로 일반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회적 특혜란 희소한 지상파 주파수 자원의 분배나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의 지원을, 차별화된 서비스란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공영방송의 실제 운영 형태는 이상적 요건과는 매우 상이함. 인사권, 소유권, 거버넌스 문제에서 집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수신료 외에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공익적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임(강형철, 2012).

○ 공영방송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자유롭지 못함. 보편적인 공영방송이란 존재하지 않고, 정태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개별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영방송 제도를 택한 나라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임(강형철, 2004; 이준웅, 2009; 정준희, 2010)

○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을 가장 잘 제공하고 실현하기 위해 해당 사회에서 합의한 제도적 산물이며, 서비스 분류(면허)체계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칭하는 ‘공공서비스방송’과 제도로서 ‘공영방송’을 구분할 필요(최세경・심영섭・노창희, 2025)

※ ‘공공서비스 방송’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표적 방송 체제로, 모든 공중에 봉사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방송의 오랜 원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임. 공공서비스 방송은 공영방송과 배타적으로 분리・정립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공영방송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매체・다채널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로서 역할해야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과 같은 특수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정영주, 2020).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방송은 전체 방송을 유지하는 이념으로 작동하고, BBC 뿐 아니라 민영 지상파방송사까지 포함하며, 그러한 방송사들 중 공영방송 BBC는 공공서비스방송 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방송시스템으로 상정함(방정배・김경환・이영주・최세경, 2008).

○ 한편, 봉미선과 신삼수(2019)는 2019년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영방송사’를 범주화하여 KBS, MBC, EBS로 특정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공영방송사’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로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보다 보편적이고 공익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를 제시함.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이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자는 제안임

3. 공영방송의 진화

○ TV 수상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지상파 중심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과 가치를 디지털 영역의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로 확장하는 것, 즉 공영미디어(PSM)로 진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디지털 공간에서 공영미디어는 인류 보편적 공감과 인권, 평화의 추구, 상호 소통과 참여민

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디지털 공유지(Digital Commons)의 최소한의 보루라 할 수 있음(조항제, 2022)

○ 공영방송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적 책무의 범위에 디지털 영역을 포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영방송 콘텐츠의 유통과 접근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함

○ 영국 OFCOM(2021)은 PSM의 운영 목적을 '보편적 방송 서비스'에서 '보편적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하고, 공영방송 TV에 적용하던 프로그램 쿼터를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 적용하며, 디지털TV 플랫폼에 공영방송 프로그램 노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함

○ 독일은 2023년 제3차 미디어국가협약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신삼수(2025, 12)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통합형 미디어법 제정, 공영미디어의 공적책임 확대,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공공성 규율, 공영미디어 재원 안정화, 규제기관의 구조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업종 및 전송수단 중심의 분절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플랫폼·스마트TV·알고리즘·AI 기반 미디어 등 핵심 요소들이 규제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함. 또한 공영미디어의 법적 정체성이 여전히 지상파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수신료 중심 재원 구조 역시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며,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힘.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방송중심 규제에서 통합미디어법 체계로 조속한 전환, ②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 책무 재규정,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④ 공영미디어의 재원 충당 구조 혁신을 제안함

제 2 절 공영방송의 범위 획정

1. 학계에서의 기존 논의

가. 공영방송의 범주

○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범주는 KBS와 EBS에 한정된다는 시각부터 MBC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지상파 방송 전체가 공영방송에 해당한다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이견이 적은 KBS와 EBS의 경우에도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도말 기준 KBS가 50.9%, EBS가 8.5% 수준(방송통신위원회, 2025)에 불과하며, KBS2TV는 프로그램과 편성 측면에서 MBC나 SBS와 차별적이지 않음

○ MBC는 공적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이지만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재원은 100% 광고에 의존함. MBC의 독특한 소유구조와 그러한 소유구조가 가능했던 방송의 정치적 역사, 100%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 형태 등은 '태생적 이중성'(조항제, 2003)에 기반한 '기형적 형태'(조항제, 2012)이면서도 '공영적 민영방송'(윤석민, 2011)으로서 MBC의 독특한 위상을 가져옴

-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고 MBC의 지배 지분을 KBS에서 방송문화진흥회로 넘긴 것은 방송 전체의 공공적 틀을 유지하기 위한 다원적 공영방송 제도 구상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1980년 통폐합 당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지역사의 사적 지분들을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정리해 안정된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한 것임(조항제, 2025, 10).

○ 정인숙(2008)은 공영방송의 범주에 대한 논의들을 크게 지상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범주론', 실질적 공영성을 근거로 KBS, MBC, EBS를 포함하는 '사실적 범주론', 수신료라는 재원적 근거나 유료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전송 범위 등 법적 근거를 가지는 KBS, EBS만을 포함하는 '법적 범주론' 등으로 구분했음

○ 강형철(2008, 2012)은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거나 뉴스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으로서 차별적인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는 방송"으로 '공공방송'을 규정하고, 소유의 '공공성', 영향력의 '공익성', '사회적 혜택의 수혜 여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방송사 및 채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함

○ 윤석민(2011)은 디지털 다플랫폼 시대의 중심적 공영 미디어로서 사회구성원 전체를 보편적으로 아우르고, 여타 매체들과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기간 공영방송'(KBS, EBS), 공영과 민영의 혼성적 형태로 대중적 공영성을 실천하는 '공영적 민영방송 내지 민영적 공영방송'(KBS2, MBC,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특수하게 규정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 지원(공공적 예산지원 내지 유료방송 의무편성 보장 등)되는 채널로서 소유 구조상 공영일 수도, 민영일 수도 있는 '특정 목적 방송'(KTV, 국회방송, OUN, 공익 채널 등),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방송인 '민영방송' 등으로 분류함

[그림 2-1] 공공방송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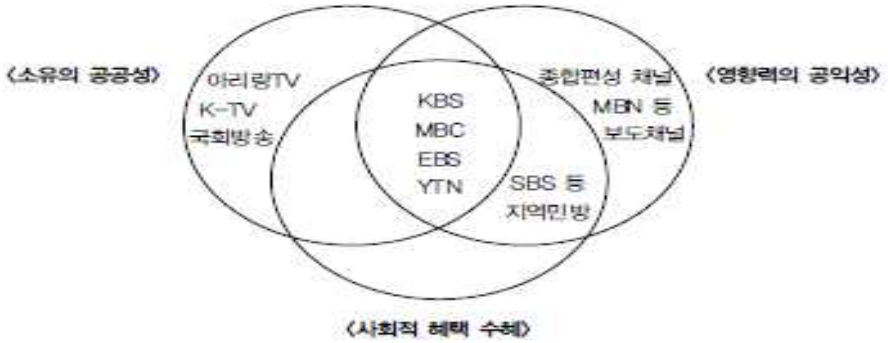

* 출처 : 강형철(2008), 26쪽에서 재인용

[그림 2-2] 다플랫폼 다채널 시대의 종합적 방송채널정책(규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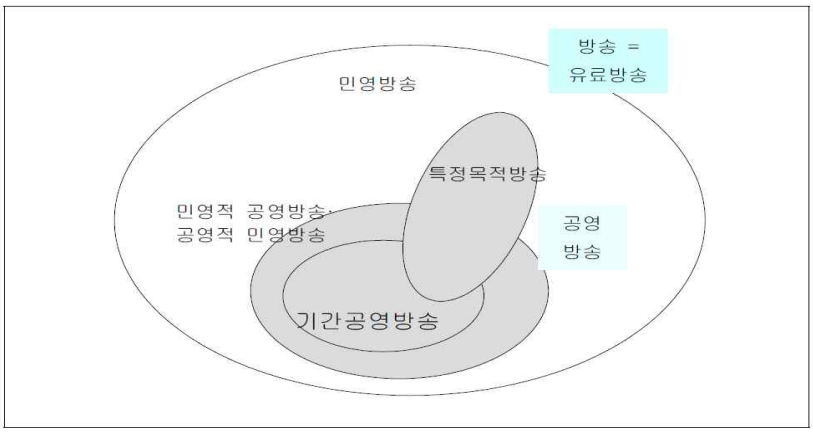

* 출처 : 윤석민 (2011), 76쪽에서 재인용

○ 정준희(2013)는 행위자 특성(공공행위자 vs. 시장행위자)과 기능적 특성(공공적 기능 vs. 시장/산업적 기능)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방송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제안함. 서비스 면허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순수공공 서비스 주체는 다채널지상파방송 플랫폼에 상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상업서비스를 위한 파생 채널(계열PP 등)을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토록 하고, 경합 공공 서비스 주체는 공공서비스 면허 채널을 다채널지상파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는 한편, 상업 서비스용 파생 채널은 무료 플랫폼과 유료 플랫폼에 모두 제공 가능토록 하며(단, 채널 재판매 등은 불가), 경합시장 서비스 주체는 공공서비스 면허 채널의 의무제공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서비스와 다채널 지상파 플랫폼의 운영 자유(= 채널 재판매 등)를 부여

< 표 2-1 > 미디어 제도의 재구성

구분		1차적(primary)-2차적(secondary) 가능	
		공공적 기능	시장/산업적 기능
행위자	공공 행위자	순수 공공 영역(1차적) - 기간 공영방송, 공공채널 - KBS	경합적 공공(1차적)/시장(2차적) 영역 - 상업적 공영방송 - EBS, MBC
	시장 행위자	경합적 시장(1차적)/공공(2차적) 영역 - 무료 방송 플랫폼 - SBS/지역방송	순수 시장 영역 (1차적) - 유료 방송 플랫폼 - 케이블, 위성, IPTV

* 출처: 정준희(2013), 12쪽에서 재인용

2. 법제도 현황

가. 공영방송 법적 근거의 부재

○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규제와 책무를 요구받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영방송’, ‘공영방송사업자’, ‘민영방송’, ‘민영방송사업자’라는 용어는 발견할 수 없음

○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개념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도 1명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만 언급되고 있음

※ 동 법에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MBC를 의미함

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요구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이들 방송사업자는 모두 시청자의 권익보호(방송법 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법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법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법 제6조) 조항을 적용받음

○ 공·민영 구분 없는 포괄적 규제는 민영방송에는 과도한 규제 가능성, 공영방송에는 차별화된 공적 역할의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강형철, 2008; 강형철, 2012; 방정배·김경환·이영주·최세경, 2008; 황근, 2010)

다.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 적용

○ 현행 방송법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소유 제한과 편성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음

○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관한 규정, 제15조 변경허가 규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규정,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관련 규정, 제73조 방송광고 규정이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방송법 제31조 방송평가 관련,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동일한 항목과 척도로 평가받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역시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동일 적용함

라. KBS와 MBC에 대한 별도 취급

○ 현행 방송법은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KBS와 MBC에 대해 일부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음

○ KBS에 대한 별도 규정 조항(제4장 제43조~제68조)을 두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제43조 제1항) 공적 책임을 부여함(법 제44조)

: 그러나, KBS에 부여된 공적 책임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모든 방송에 규정한 공익성의 임무와 질적으로 차별되지 않음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합리적 차별성 부재(방정배 외, 2008; 정인숙, 2008; 황근, 2010)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KBS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방송법 제69조 제7항)가 있으며,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는 시청점유율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고, KBS1TV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 의무 동시재송신 규정을 적용받음(방송법 제78조). KBS2TV는 의무재송신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미에 논란을 가중시킴

○ 한편, KBS와 MBC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차별적 취급 조항들이 존재함. MBC의 경우 다수 조항에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급의 근거 및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 차별적 책무는 부재함

- 1인 지분소유 제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방송법 제8조 제2항)
- 매출액 점유율 제한 규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지상파의 다른 지상파 사업 겸영제한 규정에서 MBC 예외 인정 (방송법 제8조 제8항)
-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 비율 규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방송법 제69조 6항)
-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KBS, MBC, EBS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며, KBS와 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임(방송법 제20조, 제21조)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마. MBC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차별적 책무 부여 필요

○ MBC는 방송법의 다수 조항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비해 규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며,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유관 법률에서 KBS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별도 취급의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취급에 따른 차별적 책무 규정 역시 부재하여 MBC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MBC의 역사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그대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며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비해 사실상 한번도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공영방송으로서, 각 나라의 공영방송이 그 나라가 성장해 온 정치, 사회, 문화에 부합하여 태동, 정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 사례라 할 것임(조항제, 2025, 10)

3. 판례 분석

○ 방송법에 공영방송 정의와 사업자 획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한국의 공영방송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함

가. KBS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과 병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공영방송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공적 재원으로서의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른 특별 부담금이라고 정의함.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2023헌마862(병합))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던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공영방송사로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 (서울고법 2008.1.15. 선고 2007누10947 판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KBS에 3년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과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프로그램별 기본 제작비 집행 내역과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KBS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기본제작비 집행 내역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KBS의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방송법 제46조),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 운영계획, 예산·자금 계획,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 동의 등(방송법 제49조) KBS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 직위로서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방송법 제4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KBS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KBS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

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함

○ (서울행법 2009.11.12.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서울고법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대법원 2012.2.23.선고 2011두5001 판결)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 존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이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제4조 제2항)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자 정부의 관여나 감독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 판결에서 법원은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 (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628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14723 판결: 길환영 사장 해임 소송) 방송법은 이사회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제46조 제1항),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B의 임명제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해임을 제한하는 등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사회 역시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결기관이므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 피고 역시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단

○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두36732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18누733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53436 판결: 고대영 사장 해임 소송) 한국방송공

사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3구합78057 판결: 김의철 사장 해임 소송) 방송법의 목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필요성,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사장의 책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임기 동안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사유가 방송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방송법의 여러 규정의 입법 취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취지, 사장의 임기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 기능 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누44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75300 판결; KBS 이사회 소송) 방송법의 목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필요성,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공사 이사회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면, 공사 이사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기 동안은 공사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98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4640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방송법의 목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필요성,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기 동안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성격도 일부 띤다고 할 것이어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나. EBS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8헌마454 결정; 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8헌마635 결정)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송에서 EBS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간, 계층간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교육정책적 고려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인 바,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다. MBC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13.10.2.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방송광고판매법 제5조 제2항에서 KBS, MBC, 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해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MBC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법원은 MBC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설립연혁과 지배구조,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 감독, 공영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상의 특별한 취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특별한 권한과 의무 등에 근거하여 공영방송사라고 판결함. 첫째, MBC는 비록 민영방송사로 출발하였으나, 5.16 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을 거쳐 국가에 반납된 주식 70%가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영방송사로서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연혁을 가지고 있음. 둘째, 2000년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포함한 방송문화진흥회 소관 사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보고하

거나 답변하여야 하는 바, 결국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임.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라고 규정하여 MBC에게도 KBS나 EBS와 같은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셋째, 방송법의 여러 조항들은 MBC를 KBS, EBS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거나 MBC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방송법 제8조 제2항,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1호, 방송법 제8조 제8항, 방송법 제69조 제6항 등에서 KBS, EBS와 마찬가지로 MBC는 예외를 인정받으며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음. 넷째,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 제1호, 제82조의2 제10항, 제137조의2 제4항 등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9조 제2항도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사에게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법원은 공영방송사라 하더라도 수신료가 아닌 방송광고 판매와 같은 재원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 입법자에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므로, 국가 재정에 기반을 둔 MBC가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책임의 면에서 당연한 요청이라고 보았음. 공영방송사의 경우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만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사에 대한 광고주나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MBC와 같은 공영방송사는 그 존립근거나 운영주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임. 이 판결에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하며, SBS와 같은 민영방송 사업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공영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8항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 제한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 △△방송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상업방송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소유 구조 면에서 볼 때 공법상 영조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비영리 재단법인인 ○○장학회가 30%를 투자한 방식에 의해 설립된

특수한 성격의 법인이며 △△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제1조). △△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그 경영에 관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승인, 경영평가, 정관변경승인, 사장추천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함으로써(제10조) △△방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한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제6조 제4항 및 제5항),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포함한 방송문화진흥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함(제7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적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또한 △△방송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 제1호에서는 ○○방송공사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방송)를 공영방송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지며, 자신의 비용으로 대통령 선거 등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0항),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월1회의 방송 연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137조의2 제4항). 정당법에서도 ○○방송공사와 △△방송을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공영방송사로서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정당법 제39조 제2항). 현재 △△방송 네트워크는 서울의 △△방송 본사와 17개의 지역△△방송이 계열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역△△방송의 경우 각 지역별로 △△방송이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이며, 이 외의 나머지 지분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음. 각 지역△△방송은 법적으로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독립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소유구조상 본사인 △△방송이 주식 지분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방송의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에 대해 △△방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방송은 계열사 체제인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과 대내적·대외적으로 통일적인 시스템 하에서 기능하여 △△방송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

을 이어받고 있는 동시에, 지역뉴스와 일부 자체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통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중심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상업방송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구조상 비영리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장학회가 각각 70%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며, 법률상으로도 ○○방송공사나 □□방송공사와 같은 공영방송사로 취급받고 있음. 지역△△방송의 경우 법률상 독립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이 17개의 지역△△방송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계열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방송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하에서 통일적인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고 있어, 시청자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과 지역△△방송은 동일한 편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음. 각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적 성격을 이어받아 지역기반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정당한 여론을 형성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적책임을 가진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경영주체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의 최다출자자로서 △△방송을 통해 지역△△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역시 실현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만약 △△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지분 또는 주식소유의 제한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함. 이 경우 △△방송의 지휘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방송은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영방송으로 조직의 성격이 변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된 것임. 나아가 △△방송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지역△△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각 지역△△방송은 △△방송 네트워크라는 조직에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비율의 지역 밀착형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여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중략) △△방송 및 지역△△방송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 △△방송과 계열관계에 있는 지역△△방송 사이의 특수한 지분관

계 및 이들 간의 유기적·통합적 구조, 공영방송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방송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에는 합리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남부지법 2015.2.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7.9. 선고 2015노375). 2012년 9월 국회의 “방송문화진흥회의 문화방송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자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대표이사인 ㅇㅇㅇ 사장에게 문화방송 경영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ㅇㅇㅇ 사장은 이에 불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법원은 문화방송이 비록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방송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못지 않게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및 투명한 경영 또한 중요한 사항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함. 무엇보다 법원은 ㅇㅇㅇ 사장이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이 곧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음을 지적하고, ㅇㅇㅇ 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엄격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보았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8. 22. 선고 2011가합2800 판결) 문화방송 채널이 지역별로 독립한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된 방송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기는 하지만, 시청자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채널은 하나의 편성으로 구성된 하나의 방송이며, 문화방송이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업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엄연히 정부로부터 채널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지상파를 송출한다는 점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다르지 않음. 이와 같은 전국적인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공적 책임을 수행시키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두고 그 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로서 문화방송을 통해 지역별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방송이 운영되고 있음.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 구성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 제1호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만을 공영방송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송의 특성, 방송사업자의 지위와 구조, 전국 방송 채널 운영주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 제8조 제8항 본문에서 일정한 비율의 방송사업자간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제한하면서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

○ (대법원 2024다2691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19나2040971, 2019나20409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32104, 2018가합33237 판결)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원고 A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 A에 대해 제기된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의 의혹 중 일부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진위가 전부 명확히 판명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고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이후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인 피고로서는 대표가 그러한 성격의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

○ (대법원 2015다436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093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문화방송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송법의 규율을 받는바, 방송사업자라는 원고의 특수한 사업목적과 지위를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205471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가합30701 판결) 문화방송이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국내의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로서 텔레비전 수상기만 있으면 문화방송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그에 따라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거대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들도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비판도 폭넓게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75331 판결) 방문진 이사회가 주식회사 문화방송 임원들에게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화방송의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문화방송이 위 시기에 방만하게 경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마련한 문화방송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그 평가항목은 ○ 공영성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의 구현, ○ B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 지속적 성장 플랜 마련과 추진, ○ 조직문화의 개선, ○ 'E'와 '지역성'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시장기업과 달리 문화방송은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라. 판례의 의미

○ 방송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으로 구분하고 있음

○ KBS의 경우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EBS의 경우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계층간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교육정책적 고려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적시함

○ MBC의 경우 설립연혁과 지배구조,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 감독, 공영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상의 특별한 취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특별한 권한과 의무 등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사라 하더라도 수신료가 아닌 방송광고 판매와 같은 재원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함. 지역 MBC 역시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에서 MBC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아래 대내적,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스템하에서 기능하며 MBC의 공영방송의 성격을 이어받는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판단

4.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국회에서도 KBS, EBS, MBC를 공영방송사로 정의하고 공적책임을 부여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19. 7. 29, 의안번호 21707)

-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안은 「방송법」에 KBS, EBS, MBC 이상 3개 방송사를 공영방송사로 정의하고, 공영방송사에 대하여 다른 방송사와 구분되는 공적 책임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사에 방송의 공적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개정안은 제2조제12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 EBS, MBC로 정의하고, 제6조에서 공영방송사에 대하여 민영방송사와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공적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①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을 통한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책무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하 “공적가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영방송사는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도하고 공적가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책무 등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영방송사의 재허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위원 검토 의견)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공영방송사에 관한 정의로서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만 열거하고 있을 뿐 ‘공영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어느 방송사업자까지를 ‘공영방송사’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을 지적함. MBC를 공영방송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사경제주체이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대주주에 불과하며,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도 공적책임의 주체는 MBC가 아닌 방송문화진흥회고, 개정안의 해석상 지역MBC는 공영방송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데[1] 공영방송사가 공적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1) 개정안 제2조제12호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공영방송사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지역MBC는 독립법인체이고 ㈜문화방송이 주식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을 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법인은 아님.

주체 중 일부(본사)만을 공영방송사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MBC의 경우 본 개정안에서 공영방송사로 정의하기에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그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MBC를 공영방송사로 보아야 한다는 임장에서는 MBC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송사이므로 공영방송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덧붙여 지역MBC 역시 실질적으로 본사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공영방송사로서 역할과 의무를 하고 있으므로 공영방송사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현행 「방송법」이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치관계법에서 공영방송사의 범주에 MBC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MBC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MBC를 공영방송사로 인정하는 것이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과 괴리된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결국 공영방송사의 정의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민일반의 시각과 KBS, EBS, MBC의 법적 의무 및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KBS와 EBS의 업무와 임원, 이사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MBC의 경우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3개 방송사를 공영방송사로 정의하고 공히 공적책임과 함께 국가로부터의 지원 등을 규정한다면 공영방송사 간의 형평성 및 법적 균형 등을 감안하여 MBC의 업무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임재주, 2019)

제3절 소결 :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범주 획정

○ 공영방송 정의의 무정형성, 현행 법제도상 KBS와 MBC에 대한 차별적 취급 조항, 판례 분석, 국회 법안 발의 현황 등을 반영하여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범주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공영방송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이 속한 사회의 합의에 기반함. 태생적으로 사회적 기구인 공영방송은 해당 사회가 수용 가능한 공적 소유의 형태, 공적 재원의 조달 방식, 공적 책무의 범위로 구체화됨. 중요한 것은 무릇 공영방송이란 이러해야 한다는 소유구조와 재원, 공적 책무의 개념적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책무를 담지할 공영방송사를 특정하는 작업이라 할 것임. 무정형의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당 사회에 부합하는 양태를 지니게 되며, 법제도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책무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임. 공적 소유와 공적 재원, 공적 서비스 요건 중 무엇을 공영방송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지만, 기준을 정립한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송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정영주, 2015)

- 공적 거버넌스, 공적 재원, 공적 책무의 요소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공영방송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의 규범력을 고려하여 법적 정의와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논의들과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가 소유구조나 재원의 성격만이 아니라 방송의 결과물이나 방송서비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송의 범위를 획정하는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와 재원에 비해 공적 책무는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차별성이며 가장 강조해야 할 지점이기도 함. 즉, 국가적 동원이나 사적 이익 등이 아닌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적 책무 수행을 목표로 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차별적인 공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평가를 위해 협약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차별적 책무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어야 함
- 현행 법제와 판례 등에서 KBS, MBC, EBS를 별도 취급하고 공영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영방송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 공영방송 협약 제도는 이와 같은 별도 취급에 부합하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영방송 공통의 공적 책임과 공영방송 사업자간 차별적 책무를 구체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영방송의 범주와 협약 제도 대상 사업자의 확정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함

제3장 공영방송의 책무와 평가 체계 개선 : 협약 제도

제1절 공영방송의 책무와 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1. 재허가/평가 제도 현황

가.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현황 및 평가

○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 제도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받고 방송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함

○ 방송평가는 매년, 재허가 심사는 최대 5년 이내 유효기간 설정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 · 절차)의 심사항목

①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③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프로그램 내용 영역, ② 방송프로그램 편성 영역, ③ 방송사 운영 영역, ④ 기타 감점

< 표. 3-1 > 현행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평가 제도

명칭	대상	내용	근거
재허가 심사	허가/승인 방송사	최대 5년 이내 재허가 유효기간 부여	방송법 제10조 방송법 제17조
방송평가	허가/승인 방송사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	방송법 제31조
방송심의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	방송법 제32조
시청자위원회	종편, 보도, 홈쇼핑 채널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법 제87조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종편, 보도 채널	시청자 의견 수렴	방송법 제89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KBS	시청자 의견 수렴, 불만처리 및 청원 사항 수행	방송법 제54조
경영평가	KBS	당해 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공표	방송법 제49조

○ 공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동일 평가 항목과 배점을 적용하고, 재허가 1,000점 만점 중 400점을 방송평가 결과로 대체함

○ 재허가 심사 항목과 방송평가 항목은 다수 중복됨(표 참조)

< 표. 3-2 > 방송평가 및 재허가 심사 항목 현황

방송평가 항목	재허가 심사 항목
ㅇ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	ㅇ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기구, 인력, 심의절차, 방법, 심의실적 등) ㅇ 편성규약 제정·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
ㅇ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 시상 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 실적 상대평가	ㅇ 국내외 수상실적 및 방송프로그램 외 수출 실적 평가
ㅇ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ㅇ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ㅇ 시청자 평가원 운영 현황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
ㅇ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ㅇ 시청자 민원처리 현황의 적정성 -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 -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 자체 민원처리 결과 및 처리 적정성 ㅇ 시청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ㅇ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현황 ㅇ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방송사 고지 실적
ㅇ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ㅇ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
ㅇ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편성 비율	ㅇ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 및 계획

ㅇ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 방송분야(보도 40%, 오락 60%) 편성 비율 평가	ㅇ 분야별 방송비율
ㅇ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ㅇ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 ㅇ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편성 실적 및 계획 비율
ㅇ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 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ㅇ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 -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 및 반영실적
ㅇ 방송내용물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내용물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ㅇ 매출액 대비 방송제작비 투자 실적 등 ㅇ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세부 실적 ㅇ 방송기술 관련 투자 현황 ㅇ 신규서비스 도입 투자 실적
ㅇ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ㅇ 중소방송과의 상생 및 협력 실적 ㅇ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상생 실적
ㅇ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ㅇ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율 - 자기자본증가율
ㅇ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ㅇ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 대비 실적 - 경영진 구성 절차 개선, 경영감시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실적
ㅇ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ㅇ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및 세부 실적
ㅇ 감점 사항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ㅇ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형벌)에 따른 감점 ㅇ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ㅇ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ㅇ 시정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건수 감점

○ 400점을 차지하는 방송평가에서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평가 배점은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보다 더 높지만, 지상파방송사 내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간의 배점 차이는 없음

< 표. 3-3 > 방송평가 중 지상파 및 공영방송의 차별적 평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질 평가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TV 중 KBS, MBC, SBS, 종편PP 대상 - 지상파TV : 40점, 종편PP : 30점
자체 심의/공정보도 평가 위원회	- 보도를 하는 모든 방송 채널 대상 - 지상파TV중앙 : 55점, 종편PP : 50점, 지상파TV지역 : 35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지상파 방송사업자(TV)와 종편PP 대상 - 지상파TV : 50점, 종편PP : 40점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 PP 대상 - 지상파TV : 50점, 종편PP : 40점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지상파TV 중앙 중 UHD 본방송 개시 사업자만 25점 배정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	- KBS-1TV 지역총국, 지역 MBC-TV, 지역민방-TV 대상 - 자체제작 비율 평가(30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40점)

나. 재허가/방송평가 제도의 한계

○ 현행 재허가/방송평가 제도는 법으로 규정한 의무를 사업자가 실현하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해 평가사항을 명문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일방적· 위계적 규제 방식

○ 현행 재허가/방송평가 제도는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차별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영방송이 공적 목적을 위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방송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달에 대한 실효적 통제도 부재한 채 현상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뿐 공영방송의 차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음

○ KBS 1TV, KBS 2TV, MBC가 지향해야 하는 채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 외에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상업 채널 및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부재함

○ KBS가 차별화된 자기평가 제도로서 자체 수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이사회가 경영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하기 어렵고 매년 경영평가단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정 경영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등도 자주 변동되며 계량화된 지수보다는 정성적인 서술 형태로 제시되어 경영의 성패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김용호, 2010; 방정배・최세경, 2003; 이민웅 외, 2009). 또한,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성과급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음(방정배・최세경, 2003; 이민웅 외, 2009). 현행 법령상에도 경영평가 시행과 공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경영평가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영방송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방송법 제51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MBC는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법 제10조) MBC의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및 공표, 정관 변경 승인,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적책임이 무엇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평가의 경우 KBS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한편,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허가 제도가 정권이나 규제 기구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함

○ 현행 재허가/방송평가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공적 책무의 내용에 대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성과 그에 부합하는 공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직무 이행에 적절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식을 결정하며, 성과 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및 법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오형일・홍종윤・정영주, 2021)

제2절 공영방송의 차별적 책무와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협약 제도 도입 논의

1. 협약제도 도입 논의 경과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개선추진반 (2020),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을 운영하고,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제안함

○ 공영방송 관련 법적 정의 등이 없는 상황에서, KBS・MBC・EBS의 공적책무 역시 민영 지상파 방송과 차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공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책무를 부과하며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협약' 형태로 구체화하여 현행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변경하고, 민영방송보다 긴 3~5년 주기로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 대책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공적 책무는 기본 책무와 해당 시기의 특별 책무로 구성하고.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 이행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보고하면, 방송・법률・경영・기술・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공영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재원 대책과 결합하여 공적 재원은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비수신료는 회계분리 등을 통해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방송통신위원회, 2021, 1, 6)

○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중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영방송 사업자를 명시하고, 별도의 평가 및 허가 체계를 도입하여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함

○ 공영방송사의 재허가 체계를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여 정부-방송사 간 협약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사에는 수신료 회계분리 및 연간 운영계획, 연차 보고서, 협약 내용 및 평가 결과, 예결산 및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 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함

○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서비스별(TV, 라디오, 온라인 등) 기본 책임과 특별책무를 규정하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협약 체결을 위한 연간 업무 추진 계획을 밝힘

다.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협약 체계 검토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도출하고 계량화된 평가방안, 이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KBS의 공적 책무 도출, 공적 역할과 운영원칙 및 그에 따른 세부 과제, 협약의 체결 주체 및 절차, 협약의 유효 기간 및 이행에 대한 평가 방식, 협약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함

라.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2022), <공영방송 재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공영방송 협약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함

○ KBS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 작업(협약서(안), 협약체결 준비 프로세스 일반 등)을 제안함

○ 협약제도의 대상 확대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공적 역할/운영원칙도 검토함

마.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2023), <공영방송 협약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협약 제도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협약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협약 체결의 절차(협약 체결의 준비, 체결 등)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협약의 이행점검과 평가의 기준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안)’ 제시

바. 방송통신위원회 (2025, 1, 14),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미디어 공공성 정립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고, 공적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을 천명함

○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위상과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 제도 도입 추진(방송법 개정)을 밝힘

○ 정부와 공영방송이 공적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 약속 → 이행 점검 → 피드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함

사.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

○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영방송 재원 구조 개편, 공영방송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 명확화,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세부 과제로 제시함

○ 특히 공영방송의 정의 및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개별 공영방송법 정비, 공영방송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촉진을 명시하고 있음

아. 미디어 3학회 공동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 (2025, 5, 15)

○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대 학회는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콘텐츠 규제 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발표함

○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서비스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책무성 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 법률이 규정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유형(내용), 범위,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협약서를 마련하여 공영방송사와 국가(정부)가 체결하고,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총괄하는 '공공서비스 협약 특별위원회'를 미디어 정책 기구 내의 법적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자. 학계에서는 정영주·홍종윤·이준웅(2022), 홍종윤·김동찬·정영주(2025, 10) 등의 연구에서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음

○ 정영주·홍종윤·이준웅(2022)은 공영방송 협약 제도가 단순히 기존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차별성 부재를 해소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 수립,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 설정,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책임 장치 도입,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홍종윤・김동찬・정영주(2025, 10)는 공영방송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제로서 협약 제도를 상정하고, KBS, MBC, EBS의 공영방송으로서 공통 책무와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차별화된 책무를 예시로 제안함

2.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의의

가. 협약제도의 취지 : 수평적 소통과 협의에 기반한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

○ 협약제도는 정부 부처와 공영방송 사업자 간에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공영방송 사업자가 법이 정한 공적 역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현됨

○ 협약제도의 도입은 단지 재허가와 방송평가 제도를 형식적으로 대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규제당국, 정당, 사업자, 일반시민 등이 공영방송 운영에 대해 연결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협상과 조정을 통해 공영방송이 공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접근 방법으로서, 법적 강제를 통한 위계적 통제나 경제적 유인 동기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영방송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협력적으로 공영방송과 상호작용, 소통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협약 제도 하에서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들을 규제기관과의 협의 하에 마련하는 한편, 협약서에 명시된 규제 조건 외에도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 과제들을 자율적인 책임하에 도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함

○ 협약 제도는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닌 협치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함

○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영방송 상호 합의에 기반하는 협약 체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 제고 기대(성욱제・송민선・강준석, 2023)

○ 협약의 당사자는 종속적인 존재일 수가 없음. 공영방송 사업자는 공영방송 협약의 당사자로서 정부부처와 협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수정하며, 규제당국과 함께 협약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임. 따라서 공영방송이 법과 규범으로 보장받은 제도적인 독립성은 협약제도

의 전제조건임.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가 자율적인 의무와 책임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임

○ 공영방송은 협약 기간 동안 법적인 의무 사항과 자율적으로 설정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며,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받는 대신 재원 사용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협약제도 도입은 KBS, MBC, EBS가 다공영 체제에서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케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공통의 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각 사별로 차별적 책무를 나눠 가지면서 공영방송 전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공적 미디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함

3.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설계

가.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

○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협약 대상이 되는 공영방송 사업자의 범주를 획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법에 명시해야 함(2장 참조)

○ 다음으로 협약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협약 체결 주체와 절차 및 기간, 협약안의 내용, 평가와 환류 체계, 관련 재원의 보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협약 대상 사업자로서 공영방송의 범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영방송 협약 제도 법적 근거 마련(협약의 절차 및 기간 등)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설정 및 법적 근거 마련 - 공적 목적 구현을 위한 협약안 마련 - 평가와 환류 체계 제도화 - 협약 기간과 재원의 법적 보장

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 협약 제도의 이념적 근거

○ 협약 제도의 출발점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설정하는 일임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협약제도의 이념적 근거로서 상업적 사업자와 차별적으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협약의 내용은 그 사회가 기대하는 공적 책무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법에 명시된 공적 책무가 있음을 전제로 함(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 2021)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함. 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KBS에 대한 공사의 공적 책임(제44조) 조항이, 방문진법에는 법의 목적 조항에(제1조) MBC의 공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BBC의 경우 가장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갖는 칙허장에 공영방송 협약 제도와 관련해 유효기간, BBC의 독립성에 대한 천명, BBC의 목적, 사명(Mission), 공적 목적(Public Purpose), 활동(Activity), 일반 의무(general duties)를 명시하고 다음으로는 BBC 이사회의 구성과 주요 기능, 이사회 회의 규정과 함께 BBC의 연간계획서 작성과 공개 의무, 연차보고서 작성과 발표 의무, 회계보고서 작성과 보고, BBC에 대한 감사와 결산 절차가 제시되어 있음(정영주・홍종윤・이준웅, 2022)

〈BBC의 공적 목적〉

5대 공적 목적	내용
① 불편부당한 뉴스와 정보의 제공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 시사보도, 팩트 기반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국민들이 **영국 전역과 전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함
②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장르와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
④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 사회 전역의 다양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대안적인 관점을 증진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적극 지원**
⑤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뉴스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영국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유하게 함

〈BBC의 일반 의무〉

① 공익에 따라 행동 ②공중과의 관계 고려(Engagement with the public) ③ 영국 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고려 ④ 높은 수준의 개방성, 투명성, 설명책임 극대화 ⑤ 협업 ⑥ 다양성 ⑦ 기술 혁신 ⑧ 엄격한 공적 자금 ⑨ 공공기관 업무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준수 ⑩ 상업적 활동 관련 일반 의무 준수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은 BBC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공적 역할’과 ‘운영원칙’으로 구분하였는데, ‘공적 역할’은 BBC의 ‘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내용/편성 관련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운영원칙’은 BBC의 ‘일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운영 관련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함. 이러한 구분은 현행 방송 평가에서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연관됨

< 표 3-4 > 방송평가 항목 현황

영역	평가항목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공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여부
편성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UHD 프로그램 편성(TV-중앙)
	자체제작 비율 및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TV-지역)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운영	재무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환경・사회・투명경영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4, 3, 27). 보도자료. 방통위,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이 연구에서는 현행 방송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법에 명시된 ‘공적 책임’ 용어를 사용하고, BBC 사례와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의 논의를 참고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으로 구성하고자 함

다.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

○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public purposes)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구현해야 하는 최종 목적을 뜻하며,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은 협약 주체들 간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 공영방송 협약제도 설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필요성 확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 목적의 설정은 필수적임

- 협약제도 도입의 첫 단추로서 KBS, MBC, EBS의 공적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사업자, 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 협약(안)은 공적 목적 구현을 위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책무와 역무, 신사업 등을 기획, 구체화하여 자율적인 차별화를 약속 형태로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임

- 공영방송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협약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부여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방송법/시행령/규칙 등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 해야 한다)과 임의규정(~ 할 수 있다, ~ 노력해야 한다 등) 등의 조항을 점검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협약을 구성해야 할 것임 : 현행 재허가 심사 항목과 방송평가 항목, 공영방송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평가 등을 검토하여 협약(안)에 반영할 수 있음
- 공영방송사는 법적 규제 사항을 넘어 공적 목적 구현을 위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책무와 신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 개발 구체화하여 약속 형태로 제시해야 함: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계획, AI 기술 개발 및 확장, 지역성 강화 계획, 공영미디어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확대 계획, 기존 시청률・점유율・화제성 등 양적 성과 중심 성과 평가를 극복하는 평가 기준 마련 등
- 이는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만 지키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을 의미하며,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책임하에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내용, 역무, 신사업을 기획, 개발, 제공하고 그 성과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

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 공영방송의 설명책임 수행 절차

○ 공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 평가 지표가 제시되면 구체적인 평가 방식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핵심은 협약 이행 평가와 설명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설명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설명 내용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제도 마련(법제화)

- 공영방송사는 상시적으로 시청자/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결과와 시청자 의견에 대한 공식적·공개적 답변을 수행하며 정기적인 문서 공표 등 제도화한 형태로 설명책임을 수행해야 함
- 규제기관은 공영방송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검토 보고서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 평가와 환류 체계에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 이행과 그 주체인 이사회와 경영진, 규제기구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함
-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한 자체 평가 체계로 연간계획서, 연차보고서, 회계보고서, 시청자위원회보고서,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공개 등을 법정 의무화 할 수 있음
- 자체 평가에 대한 외부 규제기구의 검토 및 평가 절차로 연차보고서, 예결산감사, 경영평가 보고서 등 발간을 법정 의무화할 수 있음
- 법정 의무 외에 자기규율 및 자율적 책임 하에 실시되는 평가 절차를 제도화하여 예를 들면 공정성평가보고서, 기술개발성과보고서, 상업적 활동 계획 및 성과 보고서 등을 부정기적으로 자체 발표할 수 있음

마. 협약 기간과 재원의 법적 보장

○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적 재원의 보장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함

○ 협약 기간이 곧 재원 보장 기간이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협약의 이행 결과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공적 재원을 압박하는 식으로 협약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공영방송 재원이란 성과에 대한 대가성 보상이 아니라 공영방송 면허 기간 동안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 기능해야 함

바. 협약 제도 설계와 관련한 법안 논의

○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사항으로서 공영방송 사업자 정의와 범주,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공영방송의 협약 제도 도입과 절차, 평가와 환류 체계, 재원 보장과 관련한 법안 제시가 이 연구의 범위에 해당함

○ 공영방송 개별 사업자 단위의 협약(안), 협약 이행 실적 점검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 방안 등의 하위 규정 등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4.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 공통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사업자간 책무 차별화

가. 공적 책임의 구성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으로 구성하며, 다수의 공영방송 사업자들은 공통의 공적 목적을 가질 수 있음

○ 공영방송 사업자들은 공통의 공적 목적을 지향하되, 그러한 공적 목적은 각 사별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책무 기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목적에 기여하는 각 사별 차별적 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운영원칙의 경우 공영방송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방송 뿐 아니라 거래 활동을 포함하여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공익 구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들로서, 공영방송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

나. 공적 목적의 설정

○ 공적 목적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구현해야 하는 최종 목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야 함

○ 공영방송사들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제당국과 함께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해야 함. 대규모 국민 인식 조사부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심층적 논의, 시장 내 사업자들과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BBC의 2016년 칙허장은 검토 과정에서 192,564개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수집되고 4,000여

명의 영국 국민이 직접 설문에 참여했으며 300명 이상의 자문위원과 단체가 참여한 대대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임(정은진, 2017)

○ 신삼수・김동준・봉미선(2022)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문헌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 사명, 책무로 규정된 항목을 발췌하여 17개 선택지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공영방송의 책무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확립’, ‘공론장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들과 방송사업자 발표 자료, 국회 발의안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을 어떻게 도출하였는지 살피고,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해 제시된 법안 사례들을 살피고자 함

○ 그러나 향후 협약 제도 도입시 법에 명시될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 자체가 협약 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효과를 제고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임

1) KBS의 공적 목적

○ 방송법 제44조는 공사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KBS, 2020년 ‘공영미디어미래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혁신 과제

- KBS의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는 공영방송의 5대 가치로 신뢰, 품질, 혁신, 다양성, 개방과 협력을 제시하고 각 가치에 상응하는 목표 책무 10대 과제를 설정한 바 있음

- 10대 과제 : 민주적 공론장과 저널리즘 신뢰성 회복, 콘텐츠 품격과 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확장, 미래 세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미래지향적 공영미디어 생태계 구축, 문화 정체성 확립과 다양성 확대, 거버넌스 혁신, KBS의 시청자 관여 확대, 운영체계 개선, 설명책임 체계의 강화

< 표 3-5 > KBS의 공적책무와 핵심과제

I. 가치	신뢰	품질	혁신	다양성	개방과 협력
II. 목표책무	o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 실현 -정확한 사실, 진실 추구, 해법 추구 -공정한 뉴스 정보를 통한 고품질의 저널리즘 구현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장 형성에 기여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 o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재난·위험 예방과 시민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	o탁월한 수준의 프로그램 지향 -창의적인 프로그램 -공영미디어만의 차별적 프로그램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o서비스 측면의 혁신 -기술 혁신을 통한 도달률 확대 -콘텐트 혁신 -세대 맞춤형 콘텐트 강화 o접근성의 혁신 o조직 혁신 - 조직의 효율화 및 가볍고 유연한 조직 혁신	o다양한 집단의 공존의식 강화에 기여 -지역, 세대, 성, 이념 등 다양한 목소리의 표출과 상호이해 도모 o약자 보호와 소수자 포용 -소수자의 표현/참여 권리 증진 -소수· 약자의 소통 플랫폼 역할 수행 o평화 공존과 통일 지향성 강화	o시민의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시민의 책무 책임) -제작편성에서 시민 의견 적극 수렴 -평가의 시민 참여와 공유 o시민, 공공기관, 창의 산업 전반의 협력(파트너 십) 확대 oKBS 전반의 높은 수준에 투명성과 개방성, 책임성 유지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형성(내적 거버넌스)
III. 핵심과제	1.민주적 공론장과 저널리즘 신뢰성 회복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민주적 공론장 제공 -저널리즘 신뢰성 복원 -재난방송 주관 플랫폼의 책무	2.콘텐트 품격과 경쟁력 제고 - 독창성과 완성도 높은 콘텐트의 발굴과 제작 - 방송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	3.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확장 -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 향상 - 차세대 미디어/콘텐트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4.미래 세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아동, 청소년 전	6.문화 정체성 확립과 다양성 확대 -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강화 -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 한민족 문화 정체성과 평화	7. 거버넌스 혁신 8. 시청자 관여 확대 9. 운영체계 개선

	강화 -디지털 뉴스 경쟁력 강화		문 플랫폼 - 미래세대에 소구하는 콘텐트 강화 - 미래세대의 사회화 제도역할 구현 5.미래지향적 공영미디어 생태계 구축 - 개방과 공유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 - 빅데이터 기반 방송시스템 운영 - 공공지식 라이브러리 구축	지향 방송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 포용	
IV. 설명책임	10. 설명책임 체계의 강화 o 투명성 및 운영체계의 신뢰도 향상: 활동 전반의 투명성 확대, 투명성 보고서 채택,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확보, 회사 관련 자료의 공개, 주요(이사회) 회의의 공개범위 확대				
	연간 실행계획, 성과측정, 연차보고				

*출처 :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2020, 2). <공영미디어 KBS의 미래를 위한 혁신>.

○ KBS (2021, 6), 공적 책무 확대 사업 계획서

- 2021년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두 차례의 공론화 조사 결과와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8대 과제, 37개 공적책무 사업을 도출함
- KBS 이사회가 발표한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는 KBS의 비전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① 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를 엽니다(경영 투명성, 참여) ② 공정·신뢰의 KBS 뉴스를 확립합니다(뉴스 공정성) ③ 재난 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재난방송) ④ 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내용물로 차별화합니다(내용물, 디지털, 글로벌) ⑤ 지역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를 확대합니다(지역방송, 소수자, 미디어 다양성)
- 5대 핵심 비전 하에 ①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 강화, ②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③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④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⑤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⑥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⑦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⑧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 8대 과제와 37개 사업 계획을 제시함
- 수신료 조정안은 KBS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책무의 목표와 이행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수신료 증액분(1,300원)에 한정된 계획만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전

과 과제가 KBS의 공적 책무를 망라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공영방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핵심비전	과제·사업
① 개방	과제 ❶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② 신뢰	과제 ❷ :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③ 안전	과제 ❸ :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④ 품질	과제 ❹ :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과제 ❺ :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과제 ❻ :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⑤ 다양성	과제 ❼ :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과제 ❽ :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KBS의 비전	비 고
1. 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를 엽니다. (경영투명성, 참여) - 콘텐츠 국민 공모, 사회공동 제작단, 아카이브 개방 공적책무실행 국민 평가단, 시청자참여예산제, 1020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대개편 및 정보공개 확대, 콘텐츠별 제작내역 공개 및 서비스 평가 시스템 마련 등	
2. 공정·신뢰의 KBS 뉴스를 확립합니다. (뉴스 공정성) - 저널리즘 강화 특별쇄위, 뉴스 출처와 근거 공개 제도, 팩트체크K 센터 운영, 공영방송과 저널리즘 교육 강화 등	**※ 공론조사 국민의견 (과제별 필요성)** ① 경영투명성, 시청자 참여 ② 뉴스 공정성 ③ 재난방송 강화 ④ 디지털콘텐츠 확대, 제작조직 혁신 ⑤ 소수자 서비스 확대 ⑥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개발 ⑦ 최신기술로 수신환경, 편리성 개선 ⑧ 차별화된 고품격 프로그램 ⑨ 미디어다양성 위한 재정지원 확대 ⑩ 한국문화 세계화 ⑪ 지역 프로그램 확대와 균형발전 ⑫ 한민족 동질성, 평화기여
3. 재난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재난방송) - 재난정보 허브 구축, 통합 재난미디어센터 신설, 모든 미디어와 통합 재난정보 공유, 24시간 재난정보 스트리밍 채널, 지역거점형, 시청자 참여형 재난방송, 완결형 재난방송 모델 구축, 미래 기후위기 대응, KBS 재난방송 매뉴얼 정비(재난 유형, 단계별 상세 방송 지침 등)	
4. 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콘텐츠로 차별화합니다 (콘텐츠, 디지털, 글로벌) - 차별화된 공영방송 콘텐츠(고품격 다큐, 대하드라마, 국민감동 공연, 지식정보형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예산인력 보강, 디지털 도달률 확대 전략 등	**※ 이사회 심의 (중점과제)** ① 지역방송 강화, 균형발전 ② 재난방송 강화 ③ 디지털 서비스 강화 ④ 시청자 참여, 개방 ⑤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
5. 지역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를 확대합니다. (지역방송, 소수자, 미디어다양성) - 제작기지 다변화 및 신규인력 지역 집중 배치, 지역 자체 제작 콘텐츠 대폭 확대, 지역밀착형 취재센터, 로컬 예산 126% 확대 및 로컬 편성 2배 확대 - 실버세대·다문화·장애인 디지털 플랫폼, 장애인 등 시청 편의 차세대 기술개발, 다문화·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 - 미디어다양성기금, eds수신료 지원 확대 등	

○ 방송통신위원회 (2021. 11),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의견서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TV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영역으로’ 라고 설명하는 등 공영방송의 역할에서 공영미디어로 발전해 가겠다는 입장 표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함
- 수신료 조정안은 수신료 증액분(1,300원)에 대한 계획이긴 하나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통해 어떤 공적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론조사에서 조사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우선순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국가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및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과제의 경우에 우선 순위의 편차가 매우 컸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내·외부의 시각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 현재 수신료 조정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던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과제(1차 1순위, 2차 2순위)는 투자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265억 원, 1.4%), 공론화 과정과 이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고품격 공영콘텐츠 제작 확대’ 과제에는 가장 큰 사업비(4,450억 원, 전체의 23.4%)가 투자되고 있음
- 수신료 조정안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공적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표 7] 공적책무 관련 과제의 필요성 순위 >

구 분	과제 필요성 순위			조정안 상 소요예산
	1차 공론조사	2차 공론조사	KBS 이사회	
1.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2	1	2	1,748
2.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1	2	-	265
3.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3	3	-	1,111
4.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개방	4	4	3	2,471
5.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6	5	4	4,553
6.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역량 확대	7	6	-	2,662
7.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11	11	1	1,755
8. 고품격 공영콘텐츠 제작 확대	5	8	5	4,450
9. 새로운 한류 점화	11	10		
10. UHD 방송선도	9	7		
11.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12	12		
12. 미디어 다양성 상생 지원	8	9		
계				19,015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은 현행 방송법 조항, KBS가 스스로 한 약속, 기존 연구, BBC 사례 등을 종합하여 K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공적 역할	운영원칙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론장 (재난방송 포함)	1) 시청자 참여
2) 차별적/독창적, 고품질 프로그램 창의/실험적 프로그램	2) 개방/투명성, 설명책임
3) 다양한 커뮤니티 반영 + 사회통합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3) 보편적 접근, 기술혁신
4) 문화 전달/계승 및 국제교류	4) 운영 효율성
	5) 상생/협력

현행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재난을 포함한 모든 상황하에서 시청자가 신뢰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민주주의 사회유지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민족문화를 전달 계승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2(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시청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공영방송 재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의 후속 과제에서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은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조문화 작업, 21년 연구에서 제시된 공영방송 협약의 구체적인 실무(안)(KBS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 작업(협약서(안), 협약체결 준비 프로세스 일반, 협약서 첨부 자료 양식 등) 검토, EBS의 공적 역할/운영원칙 재설정 작업을 수행함
- (공적 역할) 21년 연구 당시 제안했던 공적 책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공적 역할과 운영원칙)은 유지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공적 역할은 ①공정한 뉴스, ②차별화된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③다양성/사회통합, ④민족문화 창달/국제사회 내 한국의 인식과 이해 제고, ⑤신속·정확한 재난방송 등 5대 역할로 설정함. 21년 연구 당시 제안했던 내용을 모두 유지하되 재난방송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재난방송을 별도의 조항(제5항)으로 구분하고 일부 표현 수정
- (운영 원칙) 21년 연구와 비교하여, 현행 방송법상 시청자의 참여는 모든 방송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이며 이미 방송법 내 여러 곳(제69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등)에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중복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시청자 참여의 제도화를 운영원칙에서 제외함. 나머지 운영원칙 ①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② 시청접근권, ③ 효율적 관리, ④ 협력업체 상생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표현 수정

공적 역할	운영 원칙
1) 공정한 뉴스	1) 정보의 투명한 공개
2) 차별화된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2) 시청접근권
3) 다양성/사회통합	3) 효율적 관리
4) 민족문화 창달/국제사회 내 한국의 인식과 이해 제고	4) 협력업체 상생
5)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 (대국민 설문조사)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은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적 책무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수행함
  - 공적 역할 상위 5개 항목은 공정한 뉴스,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시사 토론 프로그램, 차별화된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나타남
  - 운영원칙 상위 5개 항목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청접근권, 장애인 시청지원, 협력업체 상생, 효율적 관리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함

현행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의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2(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표 가능한 정보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 인력, 예산,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해 현행 방송법과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연구의 법 개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현행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개정안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역할) ① 공사는 재난을 포함한 모든 상황하에서 시청자가 신뢰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민주주의 사회유지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민족문화를 전달 계승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의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2(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시청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하여야	제44조의2(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표 가능한 정보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 인력, 예산,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EBS의 공적 목적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공영방송 재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은 EBS 설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제정 목적(제1조), 업무(제7조), EBS가 공개적으로 밝힌 EBS의 임무, 역할과 주요 업무, 해외 사례(BBC, NHK) 등을 토대로 EBS의 공적 책무 내용과 법조항 신설안을 제시함
- EBS가 공개적으로 밝힌 EBS의 임무, 역할과 주요 업무는 EBS(2022), EBS TV 수신료 현실화 자료집, EBS 2030 정책자료집(2020), EBS 2030 정책 보고서(2019), 2021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2022), EBS 제작 가이드라인(2019), EBS(2019)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 등을 참조함
- (공적 역할)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전 연령의 교육(학습) 지원을 첫 번째 역할로 설정하고, 현재 EBS가 가지고 있는 강점(다큐멘터리, 고품질 프로그램 등)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설정하며 KBS의 공적책무(안)을 감안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여 구성함
- (운영원칙) 공영방송사로서 KBS와 동일한 운영 원칙을 적용하되(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청접근권 제고, 효율적 경영, 협력업체 상생 등), EBS는 송출을 KBS에 위탁하고 있는 만큼, 난시청 해소 등의 기술 개발 의무를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어, 시청접근권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항을 구성함

현행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국민이 식견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O조 (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 같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모든 연령의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O조 (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표 가능한 정보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 인력, 예산,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MBC의 공적 목적

○ MBC (2024), <2024 MBC 연례보고서>

- MBC가 밝힌 2024 경영목표에 따르면, MBC의 비전은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며 미션은 ‘시청자에게 즐거움과 신뢰를 주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임
- MBC의 핵심 가치는 ‘시청자 First’, ‘창의성’, ‘공정성’, ‘공영성’이며 전략 목표는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그룹 상생 모델 확립’으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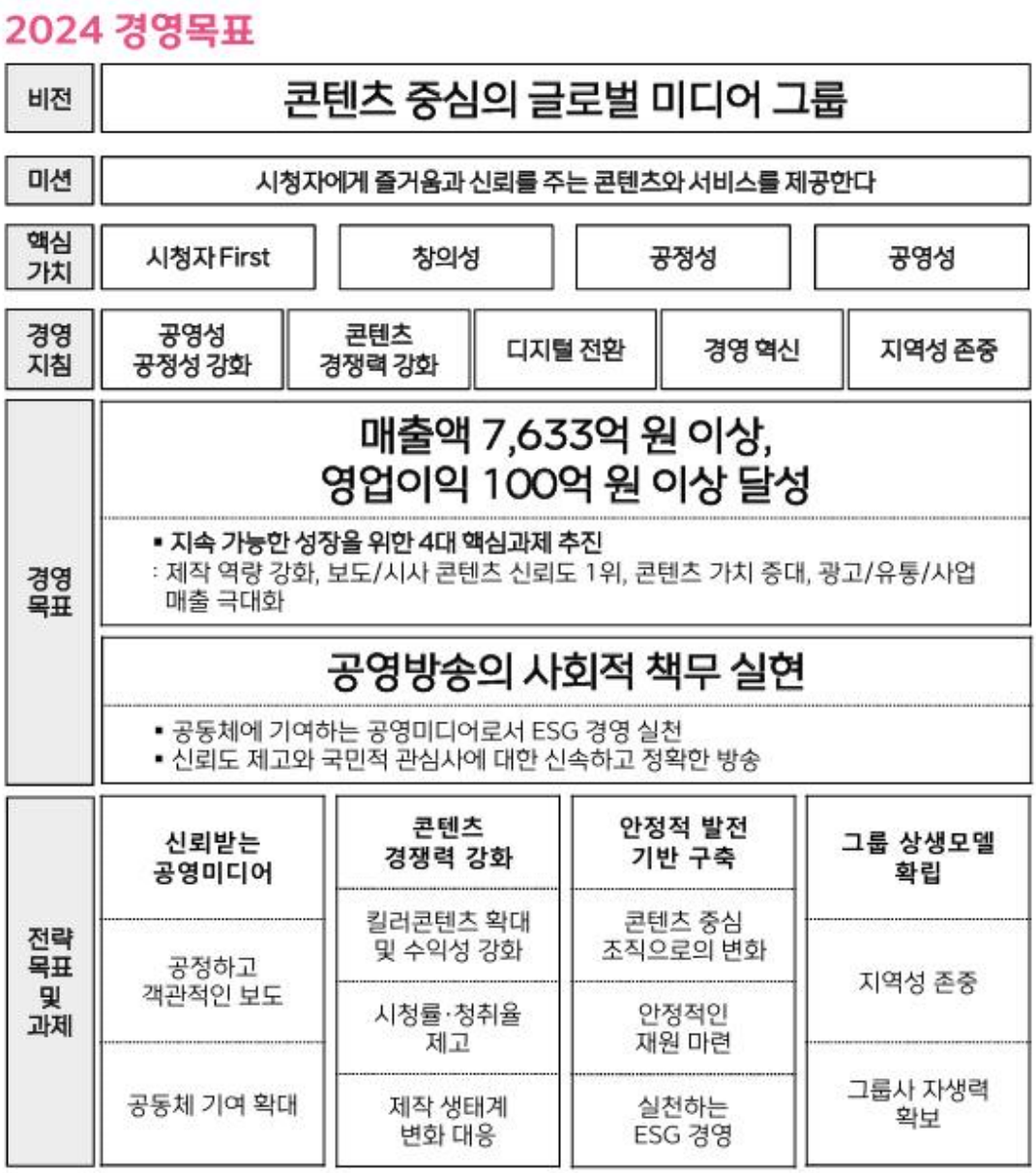

○ MBC (2025), <2024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 MBC (2025)가 밝힌 2025년도 경영지침은 아래와 같음

  • 공정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통한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AI 기반 공영미디어

  • 중단없는 조직과 경영의 혁신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 강화

○ MBC의 차별화된 책무 : 지역성

- MBC는 서울 본사와 지역계열사 16개사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본사와 지역계열사별로 방송사업 재허가가 이루어짐
- 협약 제도 도입시 지역사별로 각각 협약 체결 및 책무 이행 주체가 되며, 지역계열사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 콘텐츠 편성 등 지역성 책무를 특화하여 자임하는 책임을 설정해야 함
- 서울 MBC 본사는 지역계열사의 대주주로서 지역계열사의 거버넌스(인사 및 경영평가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게 될 것임

4) 국회 발의안에 나타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 국회에서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음

○ 제20대 국회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안(2019. 1. 11),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안 (2022. 2. 20), 제21대 국회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안(2023, 4, 13) 등에서 제시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내용과 법조항 안에 대해 살펴봄

○ 20대 국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안

- 김성수 의원안은 공영방송사를 KBS, MBC, EBS로 정의하고 방송법에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사들의 공적 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며, 공영방송사는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적 가치 이행 계획’을 연도별로 국회에 제출, 시청자에게 공표하도록 함
- 이와 함께 별도 법안으로 제출한 <한국방송공사법안>에서는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 항목으로 제시함

구분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①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을 통한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책무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하 “공적가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사는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도하고 공적가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책무 등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영방송사의 재허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방송공사법안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5조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에게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에게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및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통일 준비를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사용하여야 한다. ⑧ 공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2009년 이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가 등장하였고, 여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경쟁성 심화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의 공적가치와 공공성, 공익성을 소홀히 한 채 자극적인 소재 등을 활용하여 시청률을 올려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방송사보다 공적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KBS, EBS, MBC를 공영방송사로 정의하고 별도의 공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선도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함(임재주, 2019)

○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개정안 (2022. 10. 20, 의안번호 제2117873호)

- 장경태 의원안은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임

현 행	개 정 안
第43條(設置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3조(설치등) 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로 알권리 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 (생 략)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 공동체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양질의 방송 제작물과 서비스를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신 설〉	③ 공사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 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④ 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⑤ ----------

현 행	개 정 안
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공사는 공사의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공사는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등 공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설립 목적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서술함(김건호, 2023, 2)

○ 제21대 국회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안 (2023, 4, 13)

- 정필모 의원안은「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 · 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안으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 EBS와 MBC가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는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되어 각각의 특성과 공적 책무에 맞는 법 ·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이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해외에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준비

제정안
를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공사는 공사의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안 제6조 공적 책임의 경우, 현행 방송법과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뉴스와 정보 제공(제2항)’,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제3항)’,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 구현(제4항)’,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제5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익 보호(제6항)’, ‘시청자 권익보호(제11항)’, ‘공사 운영과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제9항)’ 등의 내용을 담아 법률에 공적 책임의 확대를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서술함(김건오, 2023, 5)

5) 소결 : KBS, MBC, EBS의 공적 책무

○ 기존 논의에서 나타나는 공영방송 공적 목적 설정의 한계

- 현행 방송법에는 공적 목적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제6조에 방송의 공적 책임, 제44조에 공사의 공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
- KBS는 ‘가치’ 혹은 ‘비전’으로, MBC는 ‘핵심 가치’로, 성욱제 · 정은진 · 황준호 · 이종원(2021),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2022)의 연구에서는 ‘공적 역할’이라는 용어로 제시되고 있는 등 용어의 통일 필요
- 내용적 측면에서도 공적 목적과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혼재되어 있고, 공영방송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일반 의무 혹은 운영 원칙들이 공적 목적으로 제시되는 등 수준 간 간섭도 혼란스러움
- 예컨대,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2022)은 재난방송을 5대 공적 역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난방송은 그 자체가 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정한 뉴스와 정보 제공’이라는 공적 목적 하에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주요 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또한 KBS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로서 시청자주권의 설명책임 강화, 거버넌스 혁신, 운영 체계 개선 등은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

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운영 원칙에 해당하며 MBC가 제시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시청자 First’ 역시 운영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국회 발의안들은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을 구분하지 않고 공적 책임 조항 하에 함께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상 공사의 공적 책임, KBS와 MBC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비전,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이 제시한 공적 역할, 국회 발의안 등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은 ① 공정한 뉴스와 정보의 제공, ② 시민 교육의 제공, ③ 고품질의 창의적・차별적 내용물, ④ 다양성의 반영, ⑤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전파 등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점이며, 이용자, 즉 시민은 공영방송 재원의 일차적 담지자로서 공영방송 역무가 제공하는 내용과 편성 면에서도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임(이준웅, 2021, 3)
- 협약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매체 규제 체계의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립의 필요성을 확인받는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 목적의 설정은 필수적임
- 협약제도의 이념적 근거로서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은 법에 명시되고,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공영방송과 규제 기구 등 협약 주체들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함
- 협약제도 도입의 첫 단추로서 우리 사회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 전문가, 시장 내 사업자, 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

○ 공적 목적과 운영원칙의 구분

- 공적 목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세부과제는 매체 환경 변화나 공영방송의 자율적 책임 하에 수정, 변경, 신설, 추가 가능함
- 다수 공영방송사들의 공적 목적은 동일할 수 있으며 각 사별 세부과제는 공영방송사들이 자율적,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공영방송사는 공통의 공적 목적을 추구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현하고 차별적 책무를 통해 다공영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공영방송사의 운영원칙은 그 자체로 공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적 목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의무로서, 모든 공영방송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공영방송의 공통 책무로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 홍종윤・김동찬・정영주(2025, 10)는 공영방송의 공통 책무로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공적목적별 세부과제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과 함께 자임하는 책임(안)은 사업자별로 자율적 마련

공영방송 공통책무 (공적 목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와 정보의 제공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고품질 콘텐츠 제공 다양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 제공 문화 정체성 계승과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콘텐츠의 국제 확산 모든 연령대의 학습 지원

- 운영원칙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공적 목적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상업적 서비스나 거래 활동을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경영과 운영 상의 기본 원칙들을 의미하며, 운영원칙 별로 세부과제에 대한 자임하는 책임(안)은 사업자별로 자율적 마련

공영방송 공통책무 (운영 원칙)	개방적이고 투명한 설명 책임 수행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 경영의 효율성 상생과 협력

○ 공영방송의 차별적 책무 : 포지티브 방식의 설계

- 홍종윤・김동찬・정영주(2025, 10)는 공영방송의 공통 책무로서 공적 목적 및 운영원칙과 함께 KBS, MBC, EBS 각각의 정체성에 따라 차별적 책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MBC는 문화와 지역성 특화, EBS는 교육과 같이 공영방송 사업자간 차별적 책무를 설계할 수 있음

[그림 3-1] 지상파 방송 책무 차별화 (예시)

<table>
<tr><td rowspan="2">차별화된 책무</td><td>재난주관방송</td><td>문화</td><td></td></tr>
<tr><td>국가기간방송</td><td>지역성
(지역네트워크)</td><td>교육</td></tr>
<tr><td>공영방송
공통책무
(공적 목적)</td><td colspan="3">-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와 정보의 제공
-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고품질 콘텐츠 제공
- 다양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 제공
- 문화 정체성 계승과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콘텐츠의 국제 확산
- 모든 연령대의 학습 지원</td></tr>
<tr><td>운영 원칙</td><td colspan="3">- 개방적이고 투명한 설명 책임 수행
-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
- 경영의 효율성
- 상생과 협력</td></tr>
<tr><td>지상파사업자
공통책무</td><td colspan="3">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익성</td></tr>
<tr><td rowspan="2"></td><td>KBS</td><td>MBC</td><td>EBS</td><td>SBS</td></tr>
<tr><td colspan="3">공영</td><td>민영</td></tr>
</table>

출처: 홍종윤・김동찬・정영주(2025, 10)

- 다수의 공영방송이 경쟁(경합)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각 공영방송사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 책무에 차이가 존재함(최세경・심영섭・노창희, 2025, 10)

  • (영국) BBC: 보편성, 다양성,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 및 시사
  채널4(C4C): 독립제작산업 육성, 독창성/실험성, 고품질 뉴스

  • (프랑스) FTV: 보편성, 다양성, 국내 콘텐츠 육성
  TV5Monde: 프랑스어/프랑스문화 전파, 국제정보 제공, 언어교육 등
  France Médias Monde (FMM) : 프랑스 국제 영향력 확대

  • (독일) ARD: 지역성 기반, 보편성, 문화/사회/정치적 다양성
  ZDF: 통합성, 문화정체성 확립, 정보 및 시사 등

  • (스웨덴) SVT/SR: 보편성, 다양성, 지역성, 고품질
  UR: 교육 및 학습, 사회화(시민 양성)

  • (덴마크) DR: 보편성, 다양성, 고품질, 공정성 및 불편부당성, 문화 및 언어 보존
  TV2: 강력한 지역성 구현, 고품질 뉴스 및 시사, 다양성 증진

5. 협약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논의

가. 협약 도입을 위한 입법 사항

○ 협약 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공적 책임을 설정하고 나면 협약의 실무적 절차, 즉 협약 체결 주체, 협약 체결 절차, 유효 기간,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협약과 연계한 재원 보장 등에 대한 법 조항들을 마련해야 함

○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 2021; 성욱제・송민선・강준석, 2022; 성욱제・송민선・강준석, 2023)와 국회 발의안 등을 통해 협약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들을 살펴보고자 함

1)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협약 제도 도입 법안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K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도출, 법에 명시
- 협약 체결 주체 : 방통위(정부) 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회 의장
- 협약 체결 절차 : 방통위/공영방송사 실무 논의 → 협약(안) 작성 → 협약(안) 방통위/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심의/의결 → 방통위/공영방송사 협약 체결
-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약속에 대한 변경은 방통위-공영방송 합의 하에 가능
- 유효기간 : 6년(사장 임기 3년, 수신료 검토 주기 3~4년, 재허가기간 최대 5년 감안)
- 이행에 대한 평가 방식 : 평가의 효율성,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3단계 평가

※ 이행실적 점검은 매년 하되 3년차에 종합평가(중간 평가적 성격), 마지막 6년차에 종합평가 수행

- 평가주체 : 방통위 (별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평가 기본계획 및 결과 심의/의결 : 방통위
- 평가 대상 기간 : 3년치 이행 실적 점검결과에 기반한 중간 종합 평가
- 평가기준 및 방법 : 약속(계량화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성)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항목별 등급(S~D) 처리, 종합 평가 결과(항목별 가중치 등 설정) 산출
- 평가 결과 공표 : 평가 결과 매년 공표(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 KBS는 계획/이행 실적/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반영

- 미이행시 개선 계획 제출,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 평가 결과의 활용 : 수신료 산정 또는 사장 선임 등 연계
- 협약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제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 (협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4조 내지 제44조의2의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는 제17조의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 또는 사장의 변경 등 협약 내용 및 이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간 합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제46조 (협약의 평가 및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3년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에 대한 제31조의 방송평가를 본항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약의 이행실적 점검기준 및 종합평가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및 종합평가 결과는 공사의 연차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로 공표한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 · 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협약의 체결(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5. 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1인, 2인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사장을 제청할 때 제46조의 협약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약의 이행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제45조의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

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신료 금액 확정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제46조의 협약 평가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공영방송 재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에서 제시한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일부 수정
- 제44조의3(협약의 체결) 조항 신설
- 협약 체결의 주체로서의 이사회 관련 조항(제49조 이사회의 기능) 개정 : 공사 이사회는 방통위 위원장과 실질적인 협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이사회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약의 체결을 통해 기존 경영평가 대체)
- (점검·평가) 방통위가 매년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3년 단위로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
  - 공사를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평가는 협약에 대한 평가로 일원화*하여 공사의 평가 부담을 완화함
    * 재허가, 방송평가, 경영평가 → 협약에 대한 평가
  - 협약의 이행점검과 평가의 기준 및 방식은 방송평가와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협약제도는 재허가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요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고시나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협약의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는 방통위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사장 선임·연임 시 반영)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선임시 이행계획, 연임시 이행성과 등)을 포함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사항이 사장 선임·연임 시 반영되도록 함(제50조 개정)
- (수신료) 수신료 결정에 있어 협약 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재원과 연계되도록 함 (제65조 개정)
- (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 공사 사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 부여 추가(제51조 개정)

- (협약 미이행시)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협약의 미이행에 대해 바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 미이행 시 바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권고나 개선계획 제출 등의 추가적인 장치를 둘 것을 제안
  -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신설 : 협약의 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의 권고 가능(제4항-미이행 시 권고),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개선계획 제출 요구 가능(제5항-미이행 시 개선계획 제출)
  - (제99조) 제44조의4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협약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개선계획이나 권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이행시 바로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로 이어지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이 경우, 협약 미이행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 가능
  - (제99조 개정) 협약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 한국방송공사 협약서(안) 제시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영성과 협약서 참고
- 협약서 첨부자료 양식(예시) 제시
- 협약 체결 도입을 위한 절차(프로세스) 매뉴얼 제시

1단계) 협약체결 준비 : 3개년도 연간계획 작성
– 공영방송사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적책무 (공적역할/운영원칙)의 구체적이고 계량화된(예: 편성시간 등) 3개년도 계획(요약표 포함) 작성(자체적인 평가 방식 제시 가능)
– 방통위는 방통위 내부에 인력을 구성(필요 시 외부인력 보강 가능)하고, 공영방송사 제출 자료의 적절성 등 실무 검토*
* 전년도 관련 실적, 타사(해외 주요국 포함) 관련 실적 등 기준

2단계) 협약 체결 : 협약서 서명
– (방송사) 협약서(안)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방통위와 공식적인 협약 체결
– (방통위) 협약서(안)에 대한 전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방송사와 공식적인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이전에 대국민 의견수렴 수행 절차 도입 가능

3단계) 협약평가 : 이행 보고서 작성
– (방송사) 협약서(안)의 첨부 자료로 제시한 연간 계획의 이행 여부를 공적책무별로 평가한 연차보고서(이행실적 포함) 작성 후 이사회 보고를 거쳐 방통위 제출
– (방통위) 방송사가 제출한 연차보고서(이행실적 포함)를 기반으로, 협약의 전체적인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후 전체회의 보고를 거쳐 공표 가능*
* 공표 여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

- 방송법 개정안 제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3(협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4조에 따른 공적 역할과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원칙의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협약 내용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사에게는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3년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공사에 대한 제31조제1항의 방송평가는 본항의 평가로 갈음한다. ② 협약의 이행 점검과 평가의 기준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 점검 결과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가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속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협약의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 · 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	제49조(이사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제44조의3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집행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청사유에는 제44조의3에 따라 체결되는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약의 이행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 징수한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신료를 결정함에 있어, 제44조의4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①방송사업자 - (중략) -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 - (중략) - 9.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9조(시정명령 등) ①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략)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중략)-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제99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사가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2023),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의 연구가 방송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담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협약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위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협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협약의 세부항목/지표별 이행여부 판단 기준 등 이행실적 점검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 방안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함
- 협약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면서 협약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기존 재허가/재승인에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사례,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사례, 연구반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안)] 도출
- 협약 체결(절차 등), 협약의 평가 및 공표 관련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안, 시행 규칙 제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안)
제44조의3(협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4조에 따른 공적 역할과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원칙 의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1항의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협약의 체결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협약 내용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第44條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3년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公社에 대한 제31조제1항의 방송평가는 본항의 평가로 갈음한다. ② 협약의 이행 점검과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 점검 결과 및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제O조 ① KBS는 OO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점검 및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법 제44조의4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 점검과 평가 (기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4조 제1항~제5항

	2. 법 제44조의2 제1항~제4항 ④ 이행 점검과 평가의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계획의 이행의 정도를 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 이행점검 및 평가의 세부 항목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다. ⑥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 시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다. 시행규칙 제O조 ①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에서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 제44조의3(협약의 체결) 제4항과 방송법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규칙 제정안 제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4항과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의 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공사는 협약의 체결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행점검 및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① 공사는 협약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내용은 [별표1]을 따르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방통위는 공사가 제출한 협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토의 기준은 공사의 지난 3년간 해당 항목과 관련한 실적 또는 타 방송사의 해당 항목과 관련한 실적 등이 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위원회와 공사는 합의한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원회와 공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한 협약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협약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이행 실적 보고서 제출) 공사는 매년 3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평가지원단) ① 위원회는 이행점검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 점검과 평가를 위한 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단은 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방송・회계・법률 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지원단은 이행 점검 또는 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대상 기간) ① 이행점검 대상 기간은 1년이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협약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해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 대상 기간은 3년이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기준) 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역할) 제1항 내지 제5항
2. 방송법 제44조의2(공사의 운영 원칙) 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방법) ① 이행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이행점검 및 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공사가 제출한 이행 실적 보고서만으로 이행점검 및 평가가 어려운 경우, 공사에게 해당 자료의 보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의 공표) ① 위원회는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공표 시 공사에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사는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약을 ~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3조 제2항 협약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1], 제9조 제1항 이행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방법은 [별표2]를 통해 구체화했음
  - [별표1]은 방통위와 KBS간에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협약서 및 협약서에 첨부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별표2]는 항목별 배점, 이행점검 및 평가의 방식을 기술하고 있음

2) 협약 제도 도입 국회 발의안

가. 개요

○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을 시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음
- 20대 국회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안(2019. 1. 11),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안 (2022. 2. 20), 제21대 국회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안(2023. 4. 13) 등이 이에 해당함

○ 20대 국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안(2019. 1. 11)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사들(KBS, MBC, EBS)의 공적 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는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적 가치 이행 계획’을 연도별로 국회에 제출, 시청자에게 공표하도록 함
- 공영방송사는 공적 가치 이행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공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을 주기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그 결과를 재허가시 반영하도록 함

구분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①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을 통한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책무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하 “공적가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사는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도하고 공적가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책무 등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영방송사의 재허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방송공사법안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5조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에게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에게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및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통일 준비를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사용하여야 한다. ⑧ 공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2. 라디오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남북교류방송,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국제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수익사업 ② 공사는 각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과 공사 운영 계획 2. 방송과 공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 책무 3. 지역방송에 대한 계획 4. 국제방송에 대한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 ③ 공사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수행한 창의적 책무와 계획의 결과 2. 국내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한 주요 활동 및 그 변화 3. 공적 책임의 이행 결과 4. 지역방송 및 국제방송의 수행 결과 5. 공사의 제작물과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집행기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④ 국가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공영방송사의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영방송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것이 방송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2] 또한, 공영방송사가 개정안 제6조제6항[3]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정안 제26조의 방송평가위원회가 행하는 방송평가의 대상이 되어 평가의 중복 가능성 및 방송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임재주, 2019)

○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개정안 (2022, 2, 20, 의안번호 제2117873호)

- KBS에 대해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하고, KBS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규정하며 연간계획의 수립과 연차 보고서,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第43條(設置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3조(설치등) 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로 알권리 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 (생략)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 공동체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양질의 방송 제작물과 서비스를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신 설〉	③ 공사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MBC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3)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책무 등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 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④ 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⑤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공사는 공사의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2. ----------기본운영계획 및 경영·연간계획
<신 설>	3. 공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사의 시청자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8. -------경영평가의 수립·이행·공표 등에 관한 사항
7. ~ 15. (생 략)	9. ~ 17. (현행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54條(業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제54조(업무) ① -------제44조에 따른 공적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
1. 라디오放送의 실시	1. 라디오방송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

현 행	개 정 안
3. 衛星放送등 새로운 放送매체를 통한 放送의 실시	3. 온라인방송서비스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4.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5. 국가에 필요한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5.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삭 제〉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삭 제〉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삭 제〉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삭 제〉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삭 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삭 제〉
〈신 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제44조에 따른 공적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2.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4.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현 행	개 정 안
	국제방송의 실시 5.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의 실시 6. 전속단체의 운영 · 관리 7.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8. 자산의 활용 및 운영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
③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

〈신 설〉	제58조의2(연간계획의 수립) ① 공사는 각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차년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물과 서비스에 관한 책무 2. 운영에 관한 업무 및 혁신 계획 3. 지역방송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에 관한 사항 5. 재난방송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 ② 공사는 각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가 수행한 연간계획의 결과 2. 국내 방송서비스에서 공사가 행한 의미 있는 활동과 변화 3. 공사의 공적 책임 이행계획 및 이행 결과 4. 지역 및 국제 방송의 수행 결과 5. 공사의 제작물과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활용 결과 6. 이사회 및 집행기관의 변화 시 임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사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③ 공사는 5년마다 공사의 경영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의 기간 2. 공사의 경영에 관한 기본 방향 3. 공사가 실시할 업무의 종류와 내용

현 행	개 정 안
	4. 공사와 자회사의 업무 적정성과 체제 5. 수신료 체계, 수준 및 기타 수신료와 관련된 사항 6. 기타 공사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공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이행평가, 공사의 시청자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고, 현행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경영·연간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함(김원호, 2023. 3)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5기 비전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약제도 도입 시 이행 점검·평가를 통해 방통위와 KBS가 동일한 기준(이행 가능한 계획 약속)으로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21대 국회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안 (2023. 4. 13)

-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6조),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법」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안 제28조).

제정안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이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해외에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준비

제정안
를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공사는 공사의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등) ① 공사는 제6조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온라인 미디어서비스 4.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5. 방송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발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제6조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2. 방송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4.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 · 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5.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준비를 위한 방송의 실시 6. 전속단체의 운영 · 관리 7.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8. 보유자산의 개발 · 운영 및 임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 방송서비스에 관한 창의적 책무 2. 공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및 혁신 계획 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이하 “지역방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이하 “재난방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 ④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공사의 업무수행을 기술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8조(공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협약)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공적 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제정안
한다. ② 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중장기계획 ④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외부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통지받은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제7조제4항에 따른 해당연도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협약의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외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협약의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개정안 제7조 제3항에서 KBS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게끔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며,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온 상황에서 기존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와 KBS가 공적책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6년 단위의 환류체계를 마련하려는 협약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해 기존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방통위도 공영방송 협약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협약 대상, 공적 책임의 내용(협약 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제정안에 대해 KBS는 협약 체결 주체가 KBS 사장(제정안 제15조제2항)인지, 아니면 KBS 이사회(제정안 제11조제1항제9호)인지 제정안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함

제3절 소결

○ 현행 방송평가/재허가 제도의 한계에 직면하여 공영방송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협약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제시되었음

-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법에 명시하며, 공영방송사의 공통 책무와 차별적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나온 개정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 사업자의 범위, 협약제도 근거(방송평가 및 재허가 대체), 협약 제도 대상 사업자,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 운영 원칙, 이사회의 기능, 집행기관의 직무, 협약의 체결 시기, 절차 및 방법, 평가의 기준 및 방식, 평가 결과 공표, 미이행시 권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근거, 협약 체결 및 평가 관련 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 등 수신료의 결정 등과 관련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협약 대상 사업자에 대한 논의

- 기존 연구는 협약 대상 사업자에 대해 KBS, EBS를 중심으로 법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 발의안들은 KBS를 중심으로 한 법안 발의안이 다수를 차지함
- 협약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기존 재허가 체제의 변동이라는 데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고 공영방송에 차별적 책무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할 경우 MBC 역시 공적 책무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약의 핵심은 협치의 거버넌스로 전환을 의미하며, 재원 지원과도 연동되지만 공영방송 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재원 지원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마련은 수신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수신료만이 아니라 방발기금 면제 등도 지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또한, 국가기간방송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KBS에 우선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MBC, EBS에 대한 단계적 협약 추진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제4장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과 공적 재원 마련

제1절 공영방송 재원

1. 협약제도와 재원 마련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적 재원의 보장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함

○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산출, 공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공영방송 재원은 성과에 대한 대가성 보상이 아니라 공영방송 면허 기간 동안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 기능해야 함

○ 애초 설정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으므로 정해진 재원의 보장 조건이 되지 못한다거나, 협약의 이행 결과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수신료를 삭감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압박하는 식으로 협약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협약 기간과 공적 재원 간 연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협약제도는 제도 도입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공영방송 재원 모델의 유형과 특성

○ 공영방송 재원 모델은 공영방송 재정의 주요 원천이 공적재원이냐 상업적 재원이냐에 따라 구분(최세경・심영섭・노창희, 2025, 10)

- 상업 재원 모델은 광고방송을 통한 광고 수입과 프로그램/콘텐츠 판매수입 등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영방송
- 공적 재원 모델은 수신료와 같은 특별부담금, 특별세 또는 일반세에 기초한 정부보조금 등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공영방송
- 혼합 재원모델은 공적 재원과 상업 재원이 전체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영방송

- 재원이 공적 재원이냐 상업 재원이냐의 구분이 공영방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나, 상업재원만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소수에 불과하며 상업재원 모델 또는 혼합재원 모델은 공영방송과 여러 민영(상업)방송이 방송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차별적인 공적 과제가 있

는 복수의 공영방송이 서로 경쟁하는 경쟁(경합)구조에 더 많음

- 공영방송이 방송시장에서 1개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재원 모델은 대체로 재정의 대부분을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형태

구분		경쟁(경합) 시스템	독점 시스템
공적재원 모델	수신료	영국(BBC, S4C)	일본(NHK)
	세금/ 정부보조금	스웨덴(SVT, SR, UR), 덴마크(DR)	뉴질랜드(RNZ), 스페인(RTVE), 핀란드(YLE)
혼합재원 모델	수신료	독일(ZDF, ARD), **한국(KBS, EBS)**	
	세금/ 정부보조금	프랑스(FTV, TV5, FMM 등) 네덜란드(NPO, NOS, NTR 등)	
상업재원 모델		영국(채널4), 덴마크(TV2), **한국(MBC)**	뉴질랜드(TVNZ)

3. 해외 현황

○ 대부분의 주요국은 시청각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적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신료제도 개편을 추진함(최세경 · 심영섭 · 노창희, 2025, 10)

○ 공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거나 수신료를 새로운 형태의 방송분담금으로 대체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수신료를 폐지하고 특별세, 일반세 등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충당하는 공적재원 모델을 선택

국가	개편	전환/대체 제도	시행연도	대상, 산정 및 지급 방식
뉴질랜드	폐지	추가/별도 과세 없음	2000년 7월	일반 예산에서 충당
핀란드	폐지	YLE세(공영방송세), 특별세	2013년 1월	개인/기업 대상, 연소득 기준
덴마크	폐지	일반 과세 연계	2019년 1월	개인 대상, 소득세 산정(개인 공제율 인하)
스웨덴	폐지	공공서비스 수수료, 특별세	2019년 1월	개인 대상, 소득세 연동
프랑스	폐지	추가/별도 과세 없음	2022년 8월	부가가치세에서 충당
영국	확대	징수 대상 확대	2016년 1월	BBC iPlayer 시청자 포함
독일	확대	명칭 변경, 징수 대상 전환	2013년 1월	방송분담금(*Rundfunkbeitrag*), 수신 장치 → 가구/사업장

제2절 공영방송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논의

1. 기존 논의

가. 신삼수・봉미선 (2019). 공영방송 TV수신료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 1992년부터 2019년까지 KCI등재지에 게재된 수신료 관련 논문 58편 메타분석

○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은 (1)수신료 금액(현실화 필요), (2)수신료 결정절차, (3)배분/징수제도로 정리됨

○ 연구 결과,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시된 해결방안은 정파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의 '수신료위원회' 설치로 수렴되고 있음

○ TV수신료 중심의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을 위해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절차를 개선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인 현실화 장치를 마련하며, 공영방송 간 공정한 배분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들이 수렴된다는 것을 확인함

나. 봉미선・신삼수 (2019). 공영방송 TV수신료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 :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4개 법안과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을 분석함

○ 4개 법안과 6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수신료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로 두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함

○ 이는 행정적인 실효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되, 특별위원회 형태로 독립성을 최대한 구현하려는 취지임

○ 합의제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둠으로써 정파성을 최소화하고, 특별위원회로 설치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적인 지원은 받되, 수신료위원회의 업무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파성에 기초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수신료위원회' 만큼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설치하더라도 상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제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청자 참여와 전문가 중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확인함. 납부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파성으로 인해 TV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매번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정파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함. 이를 위해 정치권 및 행정부 추천인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신료위원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 대통령 임명 인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며, 지역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지역대표성 보다는 전문성에 무게를 두는 게 적절할 것이라 제안함

○ 수신료위원회의 역할은 수신료의 산정·배분·집행 감시 등으로 한정하는 게 현실적임. 각 공영방송 경영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회와 집행기관에 일임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구분	분석대상	명칭	위상	기타
입법발의안	①천영세의원(안) (2004)	수신료산정위원회	방송위원회 산하	자료요구권 규정
	②이병석의원(안) (2012)	수신료산정위원회	독립적	별도 사무국 두지 않음
	③허원제의원(안) (2012)	수신료산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매2년 보고서 제출
	④노웅래의원(안) (2014)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국회의장 소속	

구분	분석대상	명칭	위상	기타
선행연구 제안	①성숙희(2004)	수신료결정위원회	1안)국회 또는 총리실 산하 2안)방송위원회 산하	3개월 한시조직
	②노기영 외(2008)	공영방송재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③황근 외(2012)	수신료산정위원회	독립위원회	
	④이종관 외(2013)	공영방송재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방통위 징수·분배
	⑤김진웅·유영주 (2012)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위원회	국회 내 독립기구	
	⑥정정주(2019)	1안)수신료산정위원회 2안)공영방송평가위원회	총리실 직속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특별다수제 도입 필요

다. 신삼수 · 김동준 · 봉미선 (2022). TV수신료위원회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 국내 방송학자들의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수신료위원회 구성방식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N=80).

○ 전문가 85.2%가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매우 찬성’ 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힘

○ 독립기구로 설치하며, TV수신료위원회 구성의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7명 또는 9명 수준으로, 수신료위원회 자격 요건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및 ‘방송학 · 방송법 전문가’ 및 ‘경영 전문가,’ ‘회계·세무 전문가’ 등 비정치적이며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각계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함

○ TV수신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적정 수신료 산정’과 ‘배분’으로, KBS와 EBS의 재정소요 계획안을 심의하고, 객관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며,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요약됨

라. 이근옥 · 김재영 · 봉미선 (2025). 공영방송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제도의 법적 과제와 ‘TV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

○ 독일의 KEF 모델과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을 차용하여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인 ‘TV수신료위원회’ 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방송법 제4장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TV수신료법’을 제안함

○ TV수신료위원회는 독일 KEF의 법적 보장과 운영상의 장점, 그리고 국내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의 대표성이나 중립성 구조를 접목하여 공영방송 대표, 시민 대표(시청자, 학계, 미디어 전문가), 공익위원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국민의 직접적 의사와 전문적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 KBS와 EBS가 방송계획에 따른 재원 수요 예산 자료를 TV수신료위원회에 제출하면 TV수신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으로 구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저임금법을 차용하여 수신료위원회가 금액과 배분을 의결하면 수신료위원회의 의결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를 국민에게 고시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제68조의 개정을 제안함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모델을 차용하여 수신료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정파성에 휘둘리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수신료 배분율의 경우 방송법 제4장의 조문들을 개정하여 최소 30% 이상을 교육공영방송인 EBS에 할당하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함

○ TV수신료를 기존 수신기별 부과 방식에서 독일처럼 가구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와 결합 징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과 같이 모바일 시청자까지 수신료 징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 신설 'TV수신료법'에 현재 시행령 이하에 머물러 있는 절차적 규정과 산정근거, 배분기준 등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독립적 위원회 운영,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 보장, 국민참여와 정보공개 의무 등을 명문화함

조항	현행	개정 검토(안)
제64조	TV수상기 소지자는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의무. 일부 수상기는 등록 면제·감면 가능	디지털 환경 반영, OTT·모바일 등 "공영방송 시청 가능자"로 납부의무 확대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주민세 등과 결합징수 명문화, 가구세로 전환, 징수 효율성 제고
제68조·시행령 제49조	수신료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EBS 재원으로 지원 가능, EBS수신료의 3% 지원	수신료위원회가 금액·배분 의결하고, 배분율 명시하지 말고 단서 조항으로 "EBS 배분 최소 30% 이상" 명시
제65조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 거쳐 국회 승인, 공사가 부과·징수	수신료위원회 설치, 수신료 결정·배분 권한 이관, 공영방송 대표(7인), 시청자 대표(7인), 공익위원(7인) 등 21인 구성, 참여로 균형과 투명성 강화.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 징수
제46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대표성 고려(추상적 규정)	언론·방송·회계 등 15년 이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인사로 선임 기준 명문화, 추천·임명 절차 구체화
제66조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 소지자에 1년분 수신료 추징 가능	"수상기 소지자"에서 "공영방송 시청 가능자"로 납부의무자 확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현실 반영

라.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3학회 (2025. 5. 15), '공영방송수신료 산정위원회' 설립 제안

○ 미디어 3학회는 적정한 수신료 규모를 독립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주체, 수신료 산정에 관한 검토의 기준 및 절차, 수신료 배분, 수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수신료 확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산정)하는 주체로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함

마.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2025. 6),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 (가칭)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 (소속)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 국회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함

※ 방통위의 법정위원회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가 정치적 행정기구로서 정부 여당의 개입과 간섭이 상존하므로, 오히려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함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밝힘

○ (위원 구성) 전국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 지역별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 수신료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마련

※ 국회의 교섭단체가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나 방통위가 추천하는 경우는 정파적 영향력이 광역의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배제한다고 밝힘

○ (수신료위원회의 주요 업무)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 정도 평가,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의 산정 및 배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결정,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함

○ (수신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대조건 규정 개정) 수신료 산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적용기간을 3~5년으로 명시하여,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수신료 산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한 공영방송 재원 현실화 방안) 공영방송의 보유자산 활용 등 방송 외 사업수익 창출 방안 검토 필요

○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수신료 지원 대상 공영방송의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입법 사항) ‘수신료위원회’ 설치,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제65조 개정 및 제65조의 2 이하 신설, 한국방송공사의 보유자산 활용을 위한 「방송법」 제54조 개정,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광고 수수료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광고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및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8조 개정 등이 필요함

바. 최세경 · 심영섭 · 노창희 (2025, 10).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정책 과제

○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치 제안

○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TV 수신료뿐 아니라, 공영방송 협약제도에 따른 공적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원(공적재원과 상업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공적재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산정-징수-배분, 평가, 관리 감독하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함

○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중장기적 조달과 수요, 향후 발전 전망의 조사·분석 등을 통해 공영방송이 공적책무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재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재정 규모를 조정, 관리 감독하는 종합적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함

○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체 수익(수신료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공적 재원, 각종 기금, 정부지원금, 광고판매, 협찬, 프로그램 판매 등 IP, 금융 및 부동산 수입, 유보금과 이월금, 기타)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여 경영 및 재정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방송법((가칭)시청각미디어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서 미디어 정책 주무기관(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공영방송사와 행정규제기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구성) 9인 이내의 전문가(경영, 회계, 미디어산업, 미디어경영, 미디어기술 등)로 구성하고, 이들 전문가가 공영방송/공영미디어의 재정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 사무처를 설치하여 업무를 지원함

○ (재정 산정 대상) 방송법((가칭)시청각미디어법)을 통해 재정 산정 대상을 규정하되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공영방송/공영미디어로서 공적 책무를 부과할 방송사를 법률로 지정하고(KBS와 MBC(지역계열사 포함), EBS) 해당 방송사는 공영방송 책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법률에 따라 공공서비스미디어로 지정되는 방송사업자(공적 소유 및 정부 예산 또는 공적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를 추가로 지정 가능함

○ (주요 업무) ‘(가칭)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중기간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필요 예산 신청을 접수, 이 때 공영방송 사업자는 필요 예산의 설명과 비교 가능한 산출 근거자료, 전년도 집행 예산(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 라디오,

TV, OTT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는 관계사 및 자회사 회계자료를 포함, 연결재무제표 등을 통해 절약 또는 대체 예산 확보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받아야 함

○ (독립성) ‘(가칭)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재정 수요 산정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의 편성 독립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침범할 수 없고, 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신고한 재정 수요에 대해 기획·취재·제작·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및 공영방송 협약 제도를 통한 ‘협의’를 기반으로 필요 예산이 적절한 규모에서 산정되었는지, 경제적이고 절약적인지,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함

○ (재정 산정에 포함할 요소) ‘(가칭)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도매물가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연금 상승률,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공영방송사별 재정 규모 검토 및 공적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역적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공적책무 계획과 평가 등을 반영

○ (재정산정보고서 제출) 공영방송사는 매년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공적재원에 대한 단기 중기 수요 산정을 위한 신청서, 관련 설명자료 및 근거 등을 위원회에 제출(예: 전년도 말 기준 자료를 3월에 제출하는 방안)하고 위원회는 단기·중기 재정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디어 정책 주무기관(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해당 주무기관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주무기관의 검토의견서) 주무기관은 위원회가 산정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있으며(예컨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연금 상승률 등 지표), 공적재원의 범주와 조정액(인상/인하), 배분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시청각미디어발전기금), (가칭)시청각콘텐츠생산부담금, 정부광고 등의 각종 미디어기금, 공익·공공 목적의 정부지원기금 등에서 공영방송 책무협약 이행을 위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재원 발굴, 범주와 규모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 이와 연동하여 TV방송수신료의 적정 금액과 규모, 배분 등도 산정 가능

○ (국회) 국회는 ‘(가칭)공영방송재정위원회’가 주무기관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와 주무기관의 검토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향후 중기간의 공영방송 공적재원 유형과 규모, 배분 등을 최종 결정

○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기관 산하 행정부서의 업무로 시청각미디어법 및 시행령을 통해 명시

2. 법안 논의 현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TV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신료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산정을 위한 독립위원회 설치 관련 정책 과제를 제2기(위원장: 이경재)부터 제5기(위원장: 한상혁)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매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안을 정책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발표함

-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2013년)은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국민이 동의해야 정치권도 국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신료산정위원회’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천명함. 또한 제3차 수신료 인상 추진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자, 국회가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을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건의함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법의 입안을 적극 추진했음
- 제5기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에서는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 제고와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 ’ 20.9월 발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 21년 6월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발표(방송통신위원회, 2021.1.6.)

나. 국회 발의안 현황

○ 16대 이후 국회에서 다수의 수신료산정위원회 신설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음(<표> 침조)

< 표 4-1> 국회 법안 발의 현황

구분	천영세 의원안	이병석 의원안	허원제 의원안	노웅래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
소속 정당	민주 노동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통합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발의 일자	2004.10.21.	2012.3.5.	2012.4.19.	2014.1.1.	2021.5.17.	2024.11.14.
명칭	수신료 산정위원회	수신료 산정위원회	수신료 산정위원회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위상	방송위 산하	독립적	대통령 소속	국회의장 소속		
위원수	15명	10~15명	17명	21명		
형태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4년	비상임, 2년		
주요 업무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수신료 책정	수신료 산정, 배분	수신료 조정, 산정, 배분, 조사 기구 및 연구 운영, 여론 수렴	수신료 조정, 산정, 배분, 조사 기구 및 연구 운영	
진행 현황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발의

자료: 신삼수・김동준・봉미선, 2022.8.31., 「TV수신료위원회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입법과 정책(제14권 제2호)」, p.243.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이해관계를 배제한 합리적 수신료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신료위원회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적시함(조기열, 2021)
- 국회 입법안의 공통점은 수신료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판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회의장 산하에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수신료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 기준의 마련,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체로 17~21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함(최세경・심영섭・노창희, 2025)
- 최세경・심영섭・노창희(2025, 10)는 기존의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제안의

경우, 다양한 공적재원 유형 중 하나인 ‘TV수신료’에만 국한하여 현행 TV수신료에 대한 조정(인상/인하)과 현행 월 수신료 2,500원의 배분 역할만을 상정하고 있어 국내 공영방송을 둘러싼 법제도적 지형이나 사회문화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공적재원 전반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디지털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재원 유형(수신료 이외의 기타 공적재원)과 충분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원 규모와 수요 및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KBS는 수신료 위원회에 대해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 내용에 대해서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영방송 정책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음(이인용, 2014).

다. 제22대 국회 김우영 의원 대표 발의안

○ 김우영 의원 대표 발의안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제65조(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현행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날 이후 최초로 개

현 행	개 정 안
	회되는 본회의에 해당 보고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수신료는 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신설〉	제65조의2(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65조의3(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이하 “수신료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1. 회계 또는 감사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2. 방송관련 투자 및 경영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4. 방송업계 또는 방송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방송,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6. 시청자단체 또는 방송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7. 기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169조에 따른 국회의 규칙(이하 “국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수신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

현 행	개 정 안
	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수신료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수신료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신료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으로서 탈당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같은 법 제9조의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5조의4(수신료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수신료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신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5조의3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제65조의5(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2.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3.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4. 수신료의 산정 및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결정 5.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6.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신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해당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수신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신설〉	제65조의6(수신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신료의 조정 결정과 산정 및 배분은 출석위원 3분

현 행	개 정 안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수신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신료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은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다.
〈신설〉	제65조의7(사무조직) ① 수신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6조의2(수신료 징수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수상기소지자에 대한 공사의 수신료 징수권은 최초 수신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수신료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수신료 납부자의 공사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수신료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② (생 략)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에 따라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	제68조(受信料의 사용)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수신료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따라 수신료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수신료는 ①KBS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신료위원회에 신청, ②수신료위원회의 심의·의결, ③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이는 현재 ①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②방통위를 거쳐 ③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교할 때, 수신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추가되고, 방통위를 거치는 과정이 제외되는 것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현재 KBS 수신료 인상 등이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이복우, 2025, 3)
-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여 기존과 같이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방통위안에 따를 경우 현행 ①KBS이사회 심의·의결, ②방통위, ③국회의 승인 절차에서 ①이사회 심의·의결, ②수신료위원회의 결정, ③ 방통위, ④국회의 승인의 절차로 변경되는데, 이는 현행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추가로 거치게 되는 형태임
-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수신료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이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모두 제기된다는 것을 지적함(이복우, 2025, 3)
-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힘.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 내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수신료 조정안 승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는 입장임. 나아가 방통위는 행정작용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국회의장 소속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4]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수신료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방송사 허가, 방송평가 등 공영방송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규제기구인 방통위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적인 유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공영방송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신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개입이 우려된다는 반대 견해가 모두 제기된다는 것을 명시함(이복우, 2025, 3)

구분	장점	단점	관련 연구
국회 산하	- 입법적 실효성 확보	- 정치적 이해갈등 재연 - 여야 안배 위원구성 가능성	- 성숙희(2004), 유영주(2010)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규제기구와 업무적 유기성 - 산정·징수·배분·감독에 이르는 포괄적 관리 가능 - 수신료 산정·검증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용이	-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우려 - 역할과 권한 크게 약화 우려 - 한 부처 행정위원회 수준 - 정치적 영향력 개입의 우려	- 성숙희(2004), 이종관 외(2013), 봉미선·신삼수(2019), 정정주(2019)
독립기구	- 독립성 확보 - 사회적 이해당사자 참여 용이	- 실질 권한이 배제된 명목상의 기구 전락 가능성 - 기구의 권한과 역할 약화 가능성	- 노기영(2010), 황근 외(2012)
KBS 내부	- KBS 필요에 의한 효율적 수신료 산정 - KBS 자율성 유지	- 수신료 산정·검증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어려움 - 상위기구 신설 여부 등 추가검토 필요	- KBS(2020)

출처: 봉미선·신삼수, 2019: 350, 내용 재구성.

- 개정안은 수신료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4) 참고로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전혜숙의원안에 대해 법제처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행정작용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국회의장 소속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 필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수신료위원회 위원의 인원, 임기, 구성방법, 결격사유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았으나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려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구성, 인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이복우, 2025, 3)

- 수신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해관계자 중 한국방송공사는 반대입장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위원회에 대해 KBS이사회의 기능과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영방송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임.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확보 및 별도의 독립된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이복우, 2025, 3)
-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해 규정(안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운영 등은 수신료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통위 의견이 있음.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운영, 예산 등도 다른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와 같이 방통위의 심의・의결 절차, 사무처 조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가 지상파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통해 EBS 2TV를 실시 중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제작프로그램이 과소한 실정이므로, 최소배분비율을 15%로 상향함으로써 고품격 교육・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EBS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방통위는 배분기준의 상향입법 자체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이고, KBS는 배분기준 상향은 현재 KBS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 방통위는 현재 법 시행령 제49조에 EBS의 수신료 배분기준을 100분의 3으로 정하여 EBS 재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신료 배분기준은 공영방송 재원, 수신료 징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배분기준 상향입법・비율확대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

국방송공사는 EBS 지원금액 상향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현재 KBS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임(이복우, 2025, 3)

-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김우영 의원안에 대해 공영방송 TV수신료와 같이 기본권의 제한이나 자유에 관한 주요 행정작용 사항의 경우 의회유보원칙에 의해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비판이 있음(이근옥・김재영・봉미선, 2025)

제3절 소결

○ 학계 논의, 법안 발의안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 마련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수신료위원회 또는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치로 수렴된다는 것을 확인함

- 다만, 수신료 징수대상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거나 수신료를 새로운 형태의 방송분담금으로 대체, 혹은 아예 수신료를 폐지하고 특별세, 일반세 등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충당하는 공적재원모델 등이 논의되는 해외 사례들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소멸 대응 기금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발굴 등에 대한 국내 논의 등을 고려하면 수신료위원회의 논의 대상을 ‘수신료’에 국한하는 것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전반으로 확대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제5장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제1절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법안

1.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 획정

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영방송의 범주 획정

○ 사회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해당 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역사를 배경으로 공적 소유의 형태, 공적 재원의 조달 방식, 공적 책무의 범위로 구체화됨

○ 기존 학계 논의와 현행 법제, 판례 분석, 국회 법안 발의안 등은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의 마련과 공영방송에 해당하는 사업자 범주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정의 및 범주와 관련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며, 향후 사회적 숙의·합의 과정을 거쳐 대상을 특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와 정의를 마련하는 방안

○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공영방송을 정의하게 될 경우에는 방송법 체계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어 아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도 마련함

- 첫째, 공적 소유·지배구조·재원을 요건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업을 공영방송으로 명시하는 방안. 이는 이상적 기준보다 현실의 규범력을 반영한 접근임
- 둘째, 공적 책무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나 재원보다 공적 서비스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아래 제2절에서 논의할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을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안
- 셋째, 영국 BBC 사례처럼 공공서비스방송이라는 광의의 상위 개념을 신설하여 공적·특수

목적의 방송을 포괄하고, 그 중 가장 강력한 공적 책무를 지닌 사업을 공영방송으로 특정함으로써 다매체 환경에서 공적 영역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① 공적 소유, 공적 지배구조, 공적 재원 사용 등을 요건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방안

[법률] 제2조(정의) 00. “공영방송”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방송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등 공적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이사회 등 지배구조가 법률에 따라 독립성·공공성·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우 다. 제65조에 따른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경우 00. “공영방송사업자”라 함은 제2조 제00호에 따른 공영방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공영방송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적 소유와 공적 재원, 공적 서비스 요건 중 무엇을 공영방송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지만, 기준을 정립한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적 거버넌스, 공적 재원, 공적 책무의 요소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공영방송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의 규범력을 고려하여 법적 정의와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 법원 판례 역시 공영방송사라 하더라도 수신료가 아닌 방송광고 판매와 같은 재원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어 공적 소유와 공적 지배구조, 공적 재원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아도 공영방송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중요한 것은 무릇 공영방송이란 이러해야 한다는 소유구조와 재원, 공적 책무의 개념적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책무를 부담할 공영방송사를 법령에 특정하는 작업이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소유나 공적 지배구조, 공적 재원을 요건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시함
-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기구를 두는 이유인 공사의 독립성, 공공성, 이사의 대표성 규정을 참고하여 법률안을 마련함
-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를 인용하여 법률안을 마련함
- 공영방송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정의에 해당하므로 현행 방송법 제2조의 00호로 추가하는 형식을 취함

② 책무 기준 정의 방안

[법률] 제2조(정의) 00. “공영방송”이라 함은 제0조에 따른 공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송을 말한다. 00. “공영방송사업자”라 함은 제2조 제00호에 따른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기존 논의들과 판례 분석은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가 소유구조나 재원의 성격만이 아니라 방송의 결과물이나 방송서비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송의 범위를 획정하는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줌
- 거버넌스와 재원에 비해 공적 책무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차별성이며 가장 강조해야 할 지점이기도 함. 즉,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적 책무 수행을 목표로 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봉미선과 신삼수(2019)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로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보다 보편적이고 공익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 역시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범주를 획정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공적 책무와 관련하여 아래 제2절에서 마련할 공적 책무 규정을 인용하는 안으로 구성
  - 공영방송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정의에 해당하므로 현행 방송법 제2조의 00호로 추가하는 형식을 취함

③ 공공서비스방송 개념 신설 방안

[법률] 제2조(정의) 00. “공공서비스방송”이라 함은 제0조 또는 「00법」제0조에 따른 공적 목적 또는 「00법」제0조에 따른 특수 목적의 차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을 말한다. 00. “공공서비스방송사업자”라 함은 제2조 제00호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00. “공영방송”이라 함은 제00호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 중 제0조에 따른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송을 말한다.
00. “공영방송사업자”라 함은 제2조 제00호에 따른 공영방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공공서비스 방송’은 모든 공중에 봉사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방송의 오랜 원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임
- 특히 영국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은 전체 방송을 유지하는 이념으로 작동하고, 공영방송 BBC는 공공서비스방송 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방송시스템으로 구분됨(방정배・김경환・이영주・최세경, 2008)
- 공공서비스 방송은 공영방송과 배타적으로 분리・정립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영방송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매체・다채널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로서 역할해야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과 같은 특수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짐
- 방송 체제로서 공공서비스 방송의 범주에는 공적 소유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같은 형태부터 사적 소유와 광고를 재원으로 하면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까지 포괄될 수 있음
- 관련하여 강형철(2008)은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거나 뉴스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으로서 차별적인(distinctive)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소유의 ‘공공성’, 영향력의 ‘공익성’, ‘사회적 혜택의 수혜 여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방송사 및 채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방송을 제시한 바 있음
- 윤석민(2011)은 공공적 목적 내지 특수성을 지닌 방송(기간공영방송, 공영적 민영방송・민영적 공영방송, 특정 목적방송을 포괄)과 그 외 대부분의 일반 방송을 민영방송으로 구분함. ‘기간 공영방송’에는 KBS와 EBS, 공영과 민영의 혼성적 형태로 대중적 공영성을 실천하는 ‘공영적 민영방송 내지 민영적 공영방송’에는 KBS2, MBC,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특수하게 규정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 지원(공공적 예산지원 내지 유료방송 의무편성 보장 등)되는 채널로서 소유 구조상 공영일 수도, 민영일 수도 있는 ‘특정 목적 방송’은 KTV, 국회방송, OUN, 공익 채널 등이 해당함. 여기서 공공적 목적 내지 특수성을 지닌 방송을 공공서비스 방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공공적 목적 또는 특수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하도록 의무 지워진 방송으로 정의하고 이 중 공적 책무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를 공영방송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사업자를 정의 규정에 신설
- 공공서비스방송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정의에 해당하므로 현행 방송법 제2조의 00호로 추가하는 형식을 취함

제 2 절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설정과 평가체계로서 협약제도 도입 근거 법안

○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공영방송의 책무·평가·재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 연구의 법령 검토 범위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별도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EBS를 대상으로 한정함

1. 공적 책무의 설정

가. KBS와 EBS의 공적 책무 관련 법률안

○ 현행 방송법에는 공적 책무라는 용어가 없으며, 제6조에 방송의 공적 책임, 제44조에 공사의 공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

○ 모든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송의 공적책임(제5조) 및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 규정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구분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한 법개정 방안 논의가 필요함

○ 공적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의 발표 자료와 기존 연구, 국회 발의안 등에서는 '가치', '비전', '공적 역할'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한편, 운영원칙은 공영방송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의무로서, KBS와 EBS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①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공적 역할과 운영원칙으로 나누고 공적 역할을 사업자별로 구분하는 방안(기존 연구 결과), ② KBS와 EBS의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 공통의 공적목적과 운영원칙으로 나누고, 사업자별로 차별화되는 책무는 협약 내용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1안> 사업자별 책무 구분 방안

○ (공적책무) 공적책무를 공적 역할과 운영원칙으로 나누고 KBS와 EBS의 공적 역할을 구분함
- KBS와 EBS는 설립 목적 및 역할 분야가 구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책임은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경영과 관계된 운영원칙은 동등하게 규정

<표 5-1> K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현행 방송법	성욱제・정은진・황준호・이종원(2021) 개정안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역할) ① 공사는 재난을 포함한 모든 상황하에서 시청자가 신뢰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민주주의 사회유지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민족문화를 전달 계승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리 사회의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2(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시청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공사의 운영원칙) ①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표 가능한 정보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 인력, 예산,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5-2> EBS의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현행법	성욱제・송민선・강준석(2022)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국민이 식견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O조 (공사의 공적 역할) ① 공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 같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모든 연령의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O조 (공사의 운영원칙) ① 공사는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표 가능한 정보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 인력, 예산,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안> 공영방송 공통의 공적목적 및 운영 원칙, 협약을 통한 사업자별 책무 차별화

○ (공적책무) 방송법에 언급되는 용어로서 KBS와 EBS의 공적 책임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적목적과 운영원칙으로 구성하고, 사업자별 차별화되는 책무는 협약 내용을 통해 구체화

- 공적 목적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구현해야 하는 최종 목적이자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다수 공영방송사들의 공적 목적은 동일할 수 있으며 각 사별 차별적인 책무는 협약 과정에서 매체 환경 변화나 공영방송의 자율적 책임하에 수정, 변경, 신설, 추가 가능함
- 공영방송사는 공통의 공적 목적을 추구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현하고 차별적 책무를 통해 다공영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음

<KBS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 제44조 공사의 공적 목적 규정은 제1항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편성의 자유(제4조)를 참고하고, 제2항은 현행 방송법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항의 경우 현행 방송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6항을 구체화하고, 헌법 제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용으로 구성하며, 제4항의 경우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 발전 내용으로, 제5항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5항 평생 교육 진흥 내용으로 구성
- 제44조의2 공사의 운영원칙은 현행 방송법 정보공개・시청자 정보공개(제90조), 공영방송 연구・개발(제44조),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제10조), 공정한 거래 관련 규율(제85조의2 등)를 참고하여 작성

현행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목적) ① 공사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독립에 기반하여 보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소수 집단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국가 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연령과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2(공사의 운영 원칙) ① 공사는 운영, 수신료의 사용,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청 접근성과 공익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전반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EBS의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 위 KBS에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규정의 작성 내용과 동일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3(공사의 공적 목적) ① 공사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독립에 기반하여 보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사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소수 집단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국가 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연령과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4(공사의 운영 원칙) ① 공사는 운영, 수신료의 사용,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청 접근성과 공익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전반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나.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관련 법률안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설립연혁과 지배구조, 방송법상의 특별한 취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특별한 권한과 의무 등을 근거로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공영방송으로 취급받고 있으나 이와 같은 별도 취급의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취급에 따른 차별적 책무 규정 역시 부재함

- 방문진법에는 법의 목적 조항에(제1조) MBC의 공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협약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기존 재허가 체제의 변동이며, 공영방송에 차별적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감안하여 향후 공영방송의 범주 설정에 있어 MBC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공적 책무에 대한 협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간방송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KBS, EBS를 대상으로 우선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MBC에 대해서는 단계적 협약 추진 방안도 가능함

○ 이 연구에서는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방문진법에 언급된 MBC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MBC의 공적 책임에 대한 규정은 ① 협약 대상 사업자는 아니나 공영방송 사업자로서 향후 협약 체결을 고려하여 KBS, EBS와 동일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을 방문진법에 명시하는 방안, ② KBS의 공적 목적을 일부 수정하고 KBS, EBS와 동일한 운영원칙(수신료 부분 제외)을 방문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② 안에서 MBC의 차별화된 공적 목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서울 본사와 지역계열사 16개사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고 서울 본사와 지역계열사별로 방송사업 재허가가 이루어지며 법원

역시 지역 MBC가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에서 MBC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아래 대내적,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스템하에서 기능하며 MBC의 공영방송의 성격을 이어받는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여 지역성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1안〉 방문진법에 MBC의 공적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KBS, EBS와 동일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으로 명시하는 방안

- 현행 방송법은 KBS와 MBC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음
  - 1인 지분소유 제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방송법 제8조 제2항)
  - 매출액 점유율 제한 규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 비율 규제에서 KBS, MBC 예외 인정 (방송법 제69조 6항)
  -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KBS, MBC, EBS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며, KBS와 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임(방송법 제20조, 제21조)
- 방송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과 법원 판례 등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KBS, EBS와 동일한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 준수를 공적 책임으로 명시함
- 공영방송 사업자들은 공통의 공적 목적을 지향하되, 그러한 공적 목적은 각 사별 협약을 통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책무 기획으로 구체화되고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목적에 기여하는 각 사별 차별적 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운영원칙의 경우 공영방송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방송뿐 아니라 거래 활동을 포함하여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공익 구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들로서, 공영방송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목적)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독립에 기반하여 보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

	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소수 집단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국가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연령과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3(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 원칙)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운영,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시청 접근성과 공익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제공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전반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2안> 방문진법에 MBC의 공적 책임 조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을 KBS, EBS의 공적목적과 운영원칙을 수정, 보완하여 명시하는 방안

- 현행법상 KBS와 MBC를 동일 취급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고, 판례에서도 MBC를 공영방송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MBC는 공적 재원으로서 수신료를 지원받지 않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KBS와의 차별성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MBC는 서울 본사와 지역계열사 16개사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MBC 본사는 지역계열사의 대주주로서 지역계열사의 거버넌스(인사 및 경영평가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지역 MBC는 법원 판례를 통해 지역 기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MBC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의2 MBC의 공적목적 규정 중 대부분의 내용은 KBS・EBS와 동일하되, 제4항의 경우 KBS 관련 제44조 제5항 중 지역적 다양성 구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여 MBC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제44조 제5항 중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은 제6조 제6항과 중복되므로 MBC에는 추가하지 않음)
- 다만, 제1안과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이므로 공적 목적 대신 "공적 책임" 표현을 사용

- 또한 MBC의 공적 목적 중 차별화된 목적의 내용은 향후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과 규제 기구 등 협약 주체들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함
- 제5조의3 MBC의 운영원칙 규정도 대부분의 내용은 KBS·EBS와 동일하되, 수신료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문구에 넣지 않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독립에 기반하여 보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소수 집단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다. ④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연령과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3(공사의 운영 원칙)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운영,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시청 접근성과 공익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제공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전반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2. 협약 제도 도입 관련 법안

가. KBS의 협약 제도 도입 관련

1) 법률안

○ 협약 내용 검토 및 점검·평가를 전담하는 공영방송협약위원회를 방미통위 내 법정위원회로 신설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35조의6(공영방송협약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의 체결, 점검 및 평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방송협약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영방송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협약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 규정 사항(체결 주체, 재허가·방송평가 대체, 평가 및 공표, 시정명령) 수정·보완
- 아울러 협약의 해제, 해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보완하고,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이 미체결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44조의3(협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합의로 정한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종전 협약을 준용한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변경·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조의*(협약의 체결) ①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는 협약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의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제출한 협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하고, 3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중간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6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제31조의 방송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안) (제2안) ②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공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행 촉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조의*(협약의 평가 등) ① 공사는 매년 3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법 제44조, 법 제44조의2 2.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의3, 제6조의4]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이행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5(협약의 해제, 해지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상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이행 불능, 부정한 체결, 정당한 사유 없는 시정명령의 불이행, 파산·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협약 체결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 집행기관인 사장을 이사회가 제청시 제청 사유, 집행기관인 사장의 직무 규정에 협약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방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

현행	개정안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 · 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 · 자금계획 4.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u>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u> 7.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 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여야

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그 사유에는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신 설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협약의 이행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사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협약 체결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 협약 체결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을 제1조 목적부터 평가, KBS와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까지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
-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KBS 협약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후 EBS 등 공영방송의 범위에 따라 다음 연구를 통해 규칙 및 별지를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것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평가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44조의3, 제44조의4에 따라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및 이행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의 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공사는 협약의 체결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① 공사는 협약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내용은 [별표1]을 따르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사가 제출한 협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토의 기준은 공사의 지난 3년간 해당 항목과 관련한 실적 또는 타 방송사의 해당 항목과 관련한 실적 등이 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위원회와 공사는 합의한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원회와 공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한 협약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협약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이행 실적 보고서 제출)
공사는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단)
① 위원회는 이행점검,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방송・회계・법률 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이행점검,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대상 기간)
① 이행점검 대상 기간은 1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협약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중간평가 대상 기간은 3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종합평가 대상 기간은 6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기준)
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목적)
2. 방송법 제44조의2(공사의 운영 원칙)
제9조(이행점검 및 평가의 방법)
①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방법은 [별표2] 와 같다.
② 위원회는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공사가 제출한 이행 실적 보고서만으로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가 어려운 경우, 공사에게 해당 자료의 보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의 공표)
① 위원회는 이행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공표 시 공사에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의 위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0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사는 법 제O조에 따른 협약을 ~까지 체결해야 한다.

[별표 1]

협약(한국방송공사)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방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하는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체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사장(이하, “이사장· 사장”이라 한다)은 이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이 성립된다. 제3조 (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 중 이사장·사장의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장·사장과 제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이사장·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사장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이사장·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과 공사의 정관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이사장·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이사장·사장은 제5조의 목표와 제6조의 계획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적 목적과 운영 원칙의 이행을 위한 목표 및 계획서 작성 제5조 (목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사장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서에 이사장·사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이하 “목표”라 한다)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의 목표는 법 제44조와 제44조의2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사장은 협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서 작성 등)
이사장·사장은 제5조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3장 보칙
제7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용어 및 협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사장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협약은 계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 정관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OOO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OOO, 사장 OOO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체결함.

2025년 OO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서명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서명
한국방송공사 사장 서명

나. EBS의 협약 제도 도입 관련한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법과 달리 별도의 법정위원회 규정이 없으므로 공영방송협약위원회를 두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방송법상 공영방송협약위원회에서 EBS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그러나 그 외 협약 체결, 평가 대체, 평가 및 공표, 시정명령 등의 사항은 동일하게 규정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6조의5(협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이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법」 제44조의3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경우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합의로 정한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종전 협약을 준용한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 · 변경 ·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6조의6(협약의 평가 및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하고, 3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중간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6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종합평가로 방송법 제31조의 방송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 ·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1안) (제2안) ② 협약의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영방송사는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공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행 촉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6조의7(협약의 해제, 해지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상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이행 불능, 부정한 체결, 정당한 사유 없는 시정명령의 불이행, 파산 ·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협약 체결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 임원인 사장의 직무 규정에 협약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EBS법 관련 규정을 정비

현 행	개정안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신 설 〉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 ·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3. 예산 ·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의2. 제9조에 따른 사장 ·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6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8.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10. 손익금의 처리 11. 정관의 변경 12.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1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신 설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약의 이행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3절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1. 공영방송재정위원회(가칭)

○ 공영방송 재정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 및 운영 원칙 이행을 위한 재정을 조정·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방미통위 소속으로 공영방송재정위원회를 설치

-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규정

  * 향후 규칙 마련 과정에서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역할 및 검토 대상 재정의 범위(공적재원에 한정 또는 상업적 재원까지 포괄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공영방송사는 수신료 조정을 공영방송재정위원회에 신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방미통위에 보고하고 방미통위는 지체 없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진행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5조의7(공영방송재정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사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공적 목적 및 운영 원칙 이행을 위한 재정을 조정·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그밖에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수신료 등 재원 관련 규정의 정비

○ KBS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위 새로 생긴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국회가 수신료를 결정할 때, 방미통위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 공사는 수신료 증감에 대한 조정을 공영방송재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 수신료 규정 정비하면서 이번 기회에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

○ 만약 EBS도 공영방송재정위원회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등 재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아래 제65조의 2 제1항의 “공사”를 “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수정할 수 있음

현 행	개정안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제35조의7에 따른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수신료를 결정할 때 제35조의6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제65조의2(공사의 재원 조정 신청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5조의7조에 따른 공영방송재정위원회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등 재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조정 결과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국회는 수신료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2(수신료 징수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수신료 징수권은 최초 수신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수신료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수신료 납부자의 공사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수신료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상현 (2013). 공·민영 체계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39-74.

강형철 (2004). <공영방송론 : 한국의 사회 변동과 공영방송>, 나남.

강형철 (2008).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 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방송문화연구>, 제20권 1호.

강형철 (2012). <공영방송 재창조: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나남. 방송문화진흥총서 123.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2020, 2). <공영미디어 KBS의 미래를 위한 혁신>.

김건오 (2023,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KBS의 공적책임 명확화 등>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7873호).

김건오 (2023, 5). 한국방송공사 법안 검토보고 <한국방송공사 공적 책임 강화 등>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338호).

김용호 (2010).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의 체질 개선. 미디어 3대학회-KBS 공동세미나 <미디어 빅뱅 시대, 한국방송을 말한다> 자료집, 37-58. 2010, 8, 26.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진웅 (2008). 공영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6권 3호, 31-51.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2025, 6),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2024. 3. 13).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안)>.

방송문화진흥회 (2025), <2024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개선추진반 (2020).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방송통신위원회 (2021, 1).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방송통신위원회 (2021, 11)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2025, 1, 14),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방송통신원회 (2025).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정배 · 김경환 · 이영주 · 최세경 (2008).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 거브넌스 및 책무성 시스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방정배 · 최세경 (2003). 한국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5권 2호, 185-220.

봉미선 · 신삼수 (2019). 방송법 전부개정 논의와 쟁점에 관한 고찰 : 공영방송 법제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315-344.

봉미선 · 신삼수 (2019). 공영방송 TV수신료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 :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333-362.

신삼수 · 봉미선 (2019). 공영방송 TV수신료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54호, 101~151.

성욱제 · 정은진 · 황준호 · 이종원 (2021).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 (2022). <공영방송 재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 송민선 · 강준석 (2023). <공영방송 협약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삼수 (2025, 12). 공공서비스미디어 전환을 위한 통합 미디어 법 · 제도 방향 탐색. 한국언론정보학회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25, 12, 18. 한국방송회관.

신삼수 · 김동준 · 봉미선 (2022). TV수신료위원회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2호, 237-262.

오형일 · 홍종윤 · 정영주 (2021). 공영방송 KBS의 경영현황과 책무 재설정. <방송통신연구>, 통권 113호, 53-92.

윤석민 · 이현우 (2008). 21세기 한국사회와 공영방송: KBS2와 MBC 민영화론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2(1), 1-33.

윤석민 (2011, 3).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 방송학회 세미나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집.

윤성옥 (2011). 지상파 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29-62.

이근옥 · 김재영 · 봉미선 (2025). 공영방송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제도의 법적 과제와 ‘TV수신

료위원회’ 설치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33호, 7-36.
이민웅・최선규・김원식・이상우 (2009). <방송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9-01.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이복우 (2025,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9호).
이인용 (2014,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준웅 (2009). 공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리고 불편한 것, <한국방송학보>, 23-2, 485-525.
임재주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 검토 보고서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2019. 1. 11./ 2018159, 2018160).
정영주 (2015). 공영방송 제도 정립을 위한 현행 방송법의 한계와 입법 과제 고찰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4권 3호, 329-364.
정영주・홍종윤 (2016). 방송의 시장 여건 변화와 방송의 사회적 책무.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문. 2016.10.15.
정영주・홍종윤・이준웅 (2022).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언론정보연구>, 59(4), 59-122
정영주 (2020). MBC, 공공서비스방송(PSB) 분리의 의미-차별적 책무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신문과 방송>, 2월호, 80-85.
정윤식 (2008, 10). 공・민영 이원체계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 워크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정윤식・강명현 (2012). 「멀티플랫폼 시대 방송 규제 및 방송법제 개편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정은진 (2017).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9권 4호, 1-26.
정인숙 (2008).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2008.12.9.
정준희 (2010),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이상과 현실-복수 해답으로서 공영방송 제도와 한국적 경로에 대한 모색, 미디어공공성포럼 2010년 제1차 정기워크숍 발제문.
정준희 (2013, 2). 지상파 방송, 미래 10년의 위상과 정체성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의 모색, 방송학회 세미나 “지상파 방송, 미래 10년의 비전과 전략 : MBC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집, 7-18. 2013.2.27.

조기열 (2021,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KBS 자산의 활용 근거 마련>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413호)

조항제 (2012).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정체성,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79-118.

조항제 (2003). <한국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조항제 (2022). 디지털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공영방송: 이론적 탐사.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조항제 (2025, 10). 네트워크와 시장의 지배 시대,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영미디어(PSM) 정책연구포럼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 구조의 재설계” 자료집. 2025, 10. 13. 한국프레스센터.

㈜문화방송 (2024), <2024 MBC 연례보고서>.

최세경・심영섭・노창희 (2025, 10).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정책 과제. 공영미디어(PSM) 정책연구포럼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 구조의 재설계” 자료집. 2025, 10. 13. 한국프레스센터.

최영묵 (2021).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3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2025, 5).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 개편 방안.

한국방송공사 (2021, 6). <공적 책무 확대 사업계획서>.

홍종윤・김동찬・정영주 (2025, 10). 공영방송 제도 및 법체계 혁신-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공영미디어(PSM) 정책연구포럼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 구조의 재설계” 자료집. 2025, 10. 13. 한국프레스센터.

황근 (2010).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경제규제와 법」제3권 제2호, 224-247.

해외 문헌

Curran, J. (2002). Media and Power. London: Routledge.

OFCOM (2021).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https://www.smallscreenbigdebate.co.uk/statement

Price, M. E., & Raboy, M. (2003).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ransition : A Documentary

Reader. Hague,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Ward, D. (2004). The European Union Democratic Deficit and the Public Sphere : An Evaluation of EU Media Policy. Amsterdam. Netherlands: IOS Press,

● 저 자 소 개 ●

이 수 경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수료
· 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김 상 유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현 법무법인(유)화우 어쏘 변호사

정 영 주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강 석 준

· 고려대 국제학부 졸업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현 법무법인(유)화우 어쏘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MCC-2025-(01)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mcc.go.kr